

兩宋時期的 醫政史에 관한 연구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金基郁^{*}·朴炫局·金在哲

关于兩宋時期的醫政史研究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金基郁·朴炫局·金在哲

宋代统治者喜欢医药并重视医学的发展. 缩小宫廷医疗机构, 却扩大平民医疗与医药有关的慈善机构以改善百姓医疗条件的政策方向很进步的.

将医籍广泛地收集、校订、编纂、颁布以收存医学文献, 并且为医学的传播和普及作出奉献. 『内经』、『伤寒』等基础理论的研究方面上也运用, 金元时期成为了学术争论的基础. 这是宋代医政上最成功的政策.

由政府广求药物, 修订本草并建立製藥工厂和药店, 专卖药物、改革剂型, 以发展“成药”、统一用药的规范等, 这样的措施向药物的发展和医药的民众化很大的影响.

医药教育方面上, 在太医局和国子监里建立的“医学”教育制度有很多建功. 机构的隶属、专科的分科、考试制度、学校管理等都积了新经验. 医学上以“三舍法”、“贡额”为励医学教育的措施, 这值得肯定的.

宋代医学教育上也有过错. 譬如, 因制度的存废而有失教育的连续性. 以妨碍医药教育经验的积蓄和继承, 不但缺乏潜力、丧失动力而且没建立专门药学教育.

大部分需要医政机构的建立. 但是有隶属关系很拥挤的问题. 因为被上部所属机关所牵掣所以不够统一的指导和协助. 最高医政机构“翰林医官院”也没有统制医药机构的权限, 职责重复、人员过剩. 医官院本身里也有很多过剩人员, 不够严格的管理制度. 因此宋代医官管理方面上降落了总效率.

Key Words : 兩宋五代, 醫政史, 醫籍整理、成藥、太醫局、國子監、慈善機構、三舍法、貢額、翰林醫官院、醫政評價

兩宋時期的 醫政史에 관하여 論者は 다음과 같은

I. 序 論

본 논문은 大韓韓醫學原典學會紙 19권 Vol.2에 기고한 「秦漢시기 醫政史에 관한 연구」, 「魏晉南北朝 시기 醫政史에 관한 연구」와 「隋唐五代 시기 醫政史에 관한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中國의 梁峻 교수와 공동 연구를 통한 연속적인 연구 성과이다.

* 교신저자: 김기욱,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054) 770-2664, omdkkw@hanmail.net

다섯 가지 방면의 탐색을 시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첫째. 宋太祖 建隆 원년(960)년부터 元·世祖 至元 16년(1279년) 南宋이 멸망하기까지 319년간의 정치 개요를 요약하기로 하며, 兩宋과 공존한 遼·金の 의정은 제외한다.

둘째. 의약정책의 개선에 있어, 정부가 의약에 대한 가치관을 전환시키는 작용, 의약문헌 작업의 4가지 기본정책, 약물학 발전에 대한 정책, 정부 정책이

의학발전에 미친 영향, 宋代는 唐代의 醫事 律令을 계승 및 발전시킨 상황, 역병과 예방치료 대책, 미신적이고 비인도적인 풍속에 대한 의정 조치에 관하여 탐색하기로 한다.

셋째. 의약기구제도의 개혁에 있어, 중앙의약관리 기구의 개혁, 의학교육 기구와 제도의 개혁, 궁정의료기구의 감소, 慈善 기구의 증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넷째. 의약정책의 개선이 의학발전에 미친 영향에 있어, 의약문헌정책은 의학지식의 전파와 보급을 촉진, 약물학의 발전, 『內經』 및 『傷寒』 등 기초학과의 발전에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섯째. 송대 의정의 평가와 정치, 경제, 통치자의 사상적인 영향 등이 의정을 형성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本 論

1. 兩宋시대의 정치 개요

이 시기는 宋·太祖 建隆 원년(960)년부터 元·世祖 至元 16년(1279년) 南宋이 멸망하기까지 319년이다. 兩宋과 공존한 遼·金の 의정은 이번 章에 포함하지 않는다.

A. D. 960년 後周의 殿前都點檢인 趙匡胤이 陳橋驛(지금의 開封 동북쪽)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후주의 정권을 빼앗아 황제(宋太祖)로 즉위하여 국호를 宋으로 바꾸었는데, 역사에서는 北宋이라 칭한다. 이 이후에 17년 동안 荊南·後蜀·北漢 등을 평정하여 중국은 통일시대로 복귀하였다. 이와 같은 시기에 북송은 遼에 점거된 燕雲 16州를 되찾으려고 시도하였지만 전쟁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遼와 100여 년 간 서로 대치하였다.

A. D. 1125년에 金이 遼를 멸하고 다음해 9월 金이 남침하여 11월에 汴京을 함락하였다. A. D. 1127년 4월에는 金의 군사가 徽宗·欽宗과 后妃·宗室、大臣 등 3, 000여 명을 잡아갔고 재물도 남김없이 빼앗

아 갔다. 이에 북송은 곧 멸망하게 되었다. 같은 해 5월 남하한 宋朝 관료들이 歸德(오늘날 河南 商丘)에서 宋 휘종의 아홉 번째 아들인 趙構를 옹립하여 정권을 세우고 후에 臨安(지금의 杭州)으로 도읍하여 南宋을 세웠다. 남송과 金은 100여 년간 서로 대치하였고 A. D. 1279년에 남송은 元에 의해 멸망했다.

宋代 통치자는 당대 말기에 藩鎮이 할거하여 조성된 혼란의 교훈을 되새기고, 太祖가 陳橋驛에서 반란을 일으킨 경험에 의거하고, 宋初에 趙普가 “稍奪其權, 制其錢糧, 收其精兵”¹⁾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軍、政、財、司法 등의 권리를 전부 중앙으로 회수하고 지방 세력을 약화시켰다. 太宗 趙光義는 “奸邪共濟爲內患, 深可懼也!”²⁾라 하였다. 따라서 내부 방어에 착안한 일련의 정책을 채택하였다. 예로 권리와 관리의 직권을 분산시키는 특별조치를 채택하여 관료기구의 권력을 약화시켰다.

송대의 중앙기구로는 주로 樞密院·中書門下省 이 른바 二府와 鹽鐵司, 度支司, 戶部司 이 른바 三司로 구성되었다. 神宗 때에는 三省制를 회복시켜 尚書省이 다시 중시되었다. 또한 상서 좌우에 仆射를 설치하고 宰相으로 삼았다. 송대의 사법 기구로는 태종시대에 審判院을 설치한 것 이외에 대부분 大理寺와 刑部가 책임을 맡았다. 감찰 기구로는 御史臺와 諫院이 있었고 지방행정은 보통 路, 州, 縣 3등급으로 되어 있었다. 송대의 과거 제도는 한층 발전하였고 법전인 『宋刑統』이 최초로 인쇄되어 전국으로 보급되었다. 송대 仁宗과 神宗이 집권하던 시기에 范仲淹이 이끈 개혁과 王安石의 變法이 진행되어 사회적 진보를 상당히 촉진시켰다. 그러나 귀족 관료인 보수 세력의 반대로 인해 모두 실패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송대는 정치적으로 정비된 제도가 결핍되어 유명무실하고, 복잡하고, 기능이 중복되고, 변화가 무상한 것이 이 시기 정치제도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의정기구의 설치 는 이러한 정치제도의 영향을 받았다.

1) 李燾 撰. 續資治通鑑長篇 卷2.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14*65.
2)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卷291.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85*637.

2. 의약정책의 개선

1) 정부가 의약에 대한 가치관을 전환시키는 작용
송대 이전에는 의학과 의생의 지위가 전반적으로
비천하였다. 즉 다음과 같은 세 방면으로 탐색할 수
있다.

첫째, 의약은 方技·卜相과 같이 지위가 낮은 직업
가운데 하나였다. “凡持技以事上者, 史·射·醫·卜及百
工”³⁾이었다. 『新唐書』에는 “卜相醫巧, 皆技也……小
人能之”⁴⁾라 되어 있다. 둘째, 고대사회에는 관직을
출세의 길로 삼았고 의술은 부끄럽게 여겼다. 『千金
方』에 “朝野士庶, 咸耻醫術之名. 多數子弟誦短文構小
策, 以求出身之道”⁵⁾라 기재되어 있다. 韓愈 역시 “巫·
醫·樂師百工之人, 君子不齒.”⁶⁾라 하였다. 셋째, 의생
은 통치자의 부역 대상이었고, 이유 없이 박해를 받
은 기록이 비밀비재하였다. 文摯가 烹刑을 받아 죽고
華佗가 투옥되어 살해당한 것들 등이 이러한 예증이
다.

송대에 이르러서 세상 사람들이 의학과 의생을 경
시하던 현상이 점차 바뀌기 시작하였고 그 지위도 점
차 높아졌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에는 송대 정부가
적극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황제·대신들이 의약을 중시한 언행이다. 이
는 사실상 정부의 의약에 대한 가치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송대 황제들의
의약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중시하였는
데, 이는 다른 왕조의 황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
도였다. 송을 개국한 太祖 趙匡胤 자신이 의술을 알
아 친동생 趙光義(宋·太宗)에게 직접 땀을 쏟았다. 태
종 조광의도 의학에 관심을 가져 황제에 즉위하지 이

전에는 名方을 수집하여 “嘗有驗者千餘首.”하였다.
徽宗은 국토의 절반을 잃었지만 “……然于岐黃家言,
實能深造自得.……苟使身之醫士, 與同時諸人較長契
短, 豈在朱肱·許叔微下乎?”(『聖濟經·序』)⁷⁾라 하였다.
송대에는 황제가 의학을 중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일부 대신들도 의약에 대해 큰 흥미를 가지고 있
었다. 仁宗 때의 개혁가인 范仲淹은 그가 일생을 통
하여 지향하는 바를 개괄하여 “不爲良相, 則爲良醫”⁸⁾
라는 유명한 격언을 말하였다. 神宗 때 저명한 개혁
가인 王安石은 “……至于『難經』, 『素問』, 『本草』、諸
小說無所不讀”⁹⁾하였다. 또 어떤 대신은 의방 수집에
많은 관심을 가져 심지어 의서를 편찬하였다. 예를
들면 司馬光은 『醫問』 7권, 沈括은 『靈苑方』 20권, 蘇
軾은 『聖散子方』 1권을 저작하였고, 후에 사람들이
심괄의 『沈存中良方』과 蘇軾이 집필한 문집에 흠어
져 있는 의약 내용을 함께 묶어 책을 편찬하여 『蘇沈
良方』이라 칭하였다. 이 밖에 황제나 대신들이 의서
에 발문이나 서문을 쓴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이와
같이 송대 황제와 대신들이 의약을 중시한 정도가 다
른 왕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봉건사회에서 황제와 대신의 언행은 정책결정
에 직접 영향하고 제약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의식에
도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송대에 황제와 대신들이
의약을 중시하고 좋아한 행위는 의학발전에 유리한
일련의 정책조치가 생기게 하였고 또한 사람들의 의
식 속에 의학과 의생에 대한 지위를 높이는 데도 적극
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의학과 의생의 지위를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조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의약가
치관을 전환하는데 적극적인 영향을 끼쳤다. 송대 이
전에 의학과 의생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지위가 낮았
던 원인은 여러 방면이었다. 의학교육으로 말하자면
수당시기에 비교적 발달하였지만, 그러나 의학교육은

3) 鄭玄注. 禮記註疏 卷13. 文淵閣四庫全書·經部·禮類, 臺
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115*289.
4) 歐陽修·宋祁等奉勅撰. 新唐書 卷204. 文淵閣四庫全書·
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6*96.
5) 孫思邈撰. 備急千金要方 本序. 文淵閣四庫全書·子部·醫
家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735*10.
6) 王峻撰. 東雅堂昌黎集註 卷12. 文淵閣四庫全書·集部·別
集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1075*199.

7)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79.
8) 朴炫局 외2人譯. 中國科學技術史. 서울. 一中社. 2003. p.
555.
9) 茅坤(明)批注. 唐宋八大家文抄 卷85. 文淵閣四庫全書·集
部·總集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1384*60.

여전히 太醫署에 설치되어 있었고 國子監에서 직접 관할하는 中央六學(즉 國子學·太學·四門學·律學·書學·算學)에 비해 학생들의 입학조건과 졸업 후의 사회적 지위 등에 일정한 격차가 있었다. 中央六學 학생의 대다수는 관리의 자손으로 특히 國子學·太學·四門學의 학생들은 엄격한 가문의 요구를 규정하였다. “國子學, 生三百人, 以文武三品以上子孫, 若從二品以上曾孫及勳官二品·縣公·京官四品對三品勳封之子爲之”¹⁰⁾하였다. 가문을 요구하는 것을 이외에 이러한 학생들은 모두 일정한 교육을 받은 儒生이었고 문화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그들은 졸업 후에 대체로 고관요직을 맡았고 많은 녹봉을 받아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태의서 의학생의 입학조건과 졸업 후의 대우는 모두 국자감의 학생들보다 못하였다. 송대에 이르러서 唐制를 답습하여 太醫局을 계속 두어 의학교육을 행한 것 이외에 국자감에 “醫學”을 설립했다. 그 목적은 유생을 수용하여 의학을 가르쳐 上醫를 양성하는 것이었으며, 그리해서 儒醫가 나타나게 되었다. 국자감의 의학생은 기타 유생들의 지위와 동등하게 하여 사대부계층의 안목에 의생의 인상을 점차 바뀌어 놓음으로써 사람들의 관념 속에 의생의 지위가 제고되었다.

셋째, 송대 정부가 의학발전을 촉진시키는 일련의 정책조치를 연이어 제정한 것으로, 이를테면 의서를 교정하여 출판하고, 본초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수정하고, 제약공장과 약국을 설립한 것 등이다. 이러한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 역시 사람들의 관념 속에 의학과 의생의 지위를 높이는데 적극적인 영향을 끼쳤다.

넷째, 의학과 유학이 일정한 연계가 성립된 것으로, 사람을 구제하는 의학과 유학의 仁孝가 상호 결합하여 봉건사회가 선양한 윤리도덕의 표준에 부합함으로써 “爲人子者, 不可不知醫”¹¹⁾라는 구호가 출현하였고, 또한 사람들이 의학을 익히려는 열의를 고취시켰다.

그밖에 일부 의가들은 의학과 유학의 중요성과 상호 의존성을 널리 알리고 유학의 사회적 영향력을 빌어 의학의 영향을 확대시켰다. 仁宗시기 尙藥奉御인 趙從古는 “儒識禮義, 醫知損益, 禮義之不修, 昧孔孟之教, 損益不分, 害生民之命. 儒與醫豈可輕哉? 儒與醫豈可分哉?”(『樂金集』 卷25)¹²⁾라 하였다. 유학에서는 “格物致知”¹³⁾를 강구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 적지 않은 유학자들은 의학을 관찰 대상으로 삼아 哲理를 탐구하여 의학으로 道를 논하고 의학으로 政치를 논하였다. 따라서 유명한 유학자나 관리가 논의한 것으로 의학의 哲理를 선양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 사람들의 관념 속에 의학과 의생의 지위가 대체로 높아지게 되었다.

상술한 것을 종합하면 송대 황제 및 대신들이 의학을 중시했기 때문에 의학과 의생을 경시하던 현상이 송대에 이르러서는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의학에 대하여 다른 왕조의 통치자들에 비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가 아래 송대에는 의학발전에 유리한 일련의 정책이 만들어짐으로써 의학의 진보를 촉진시켰다.

2) 의약문헌 작업의 4가지 기본정책

송대에 황제와 대신들이 보편적으로 의학을 중시했기 때문에 송대 정부는 의학발전에 유리한 많은 정책을 제정하였다. 특히 의약문헌의 수집, 교정, 편찬, 반포 등 네 부분에 관한 것들이다. 송대에 다른 집정자들도 거의 같은 정책을 제정함으로써, 이 네 방면의 정책이 송대에서 계속 완비되고 지속적으로 관철되어 이 방면의 작업이 큰 진전을 보였다.

(1) 의약문헌의 수집

진시황이 焚書할 때 의약문헌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漢·成帝는 陳農에게 전국에 남아있는 遺

10) 馬端臨 著. 文獻通考 卷41.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11*31.

11)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80.

12)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80.

13) 黎靖德 編. 朱子語類 卷62 中庸. 中華書局. 1994. p. 1496. “온전한 지식에 다다른 사물의 이치를 궁극함에 있으니, 실제적인 사물을 통하여 궁극한 다음에 지식에 이른다(致知在格物, 物格而後知至).”

책을 찾도록 하였으며, 侍醫인 李柱國에게 方技를 轉校하도록 명하였다. 진한시대에 의학문헌을 보호하고 정리한 정책은 先秦 이래의 의학 전적이 광범하게 유전되도록 하였다. 秦에서 宋에 이르기까지 1천 여년 동안 이러한 醫籍이 의학지식을 전과한 것 이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진한 이래로 대량의 의서가 세상에 알려졌는데, 어떤 것은 정부에 의해 소장되어 전해졌고, 어떤 것은 민간 의생에게 흩어져 서로 전수되기도 하였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정부가 소장한 것은 물론 개인이 소장한 의서는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은닉되어 결국 일부 문헌들은 유실되었다. 모든 圖籍에 대해 말하자면 “五代之後, 簡編殘闕, 散落殆盡. 乾隆之初, 三館聚書, 才僅萬卷.”¹⁴⁾이었다. 이로써 남겨진 의서는 더욱 적음을 알 수 있다.

송대 개국 황제인 趙匡胤과 그의 동생 태종 趙光義는 圖籍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 仁宗이 이들에 대해 “平定列國, 先收圖籍”¹⁵⁾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들이 다시 통일시키고 얼마 되지 않아 圖籍(그 중에 당연히 의약서적도 포함됨)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이 작업에서 태종 趙光義가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송대 太平興國 초기에 태종은 三館圖書를 수집하도록 詔를 내렸다. 三館에 있는 서적과 “開元四部書目比較, 據見闕者, 特行搜訪. 仍具錄所少書, 告示中外. 若臣僚之家, 有三館圖書, 許詣官進納. 及三百卷以上者, 與子出身. 不及三百卷者, 據卷秩優給金帛. 如不愿納官者, 借本繕寫”¹⁶⁾하게 하였다. 開元四部書目に 당연히 일부 의서가 그 속에 들어있었을 것이다. 이로부터 송대에 의서를 수집하는 서적이 정식으로 열리게 되었다.

太平興國 3년(978년)에 태종이 조칙을 내려 “翰林醫官院各具家傳經驗方以獻, 又萬餘首”¹⁷⁾ 하였다. 태

평흥국 6년(981년) 12월 癸酉의 칙령에서 “太醫之方, 以十全爲上. 神農之藥, 有三品之差. 歷代之議論寔繁, 生人之性命攸系, 比令編纂, 多所闕遺. 宜行購募之文, 用申康濟之意. 宜令諸路轉運司, 遍指揮所管州府, 應士庶家有前代醫書, 并許詣進納. 及二百卷以上者, 無出身與出身, 已任職官者亦與遷轉. 不及二百卷, 優給緡錢賞之. 有詣闕進醫書者, 并許乘傳, 仍具次續食” (『宋大詔令集』 卷291)¹⁸⁾하고 하였다. 태종은 전국적으로 의서를 수집하도록 칙령을 내렸을 뿐 아니라 몸소 실천하여 자신이 누적시킨 것과 최근 수집한 것이 “兼收得妙方千餘首, 無非親驗.”¹⁹⁾하였다. 태종은 직접 名方을 수집하였고 여러 차례 명하여 전국의 의서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이는 당시 의서를 모으는 활동을 촉진시켰고 이후 황제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태종이 천하의 의서를 널리 수집한 정책이 확정된 이후부터 후세 황제들 대부분 이 방침에 따랐으며 의서의 수집 작업이 계속되었다.

眞宗 咸平 4년(1001년) 10월 甲子에 “國家大崇儒館, 博訪藝文, 雖及購求, 尙多亡逸. 特降恩制, 用廣搜延, 應中外官及民庶家, 有館閣所少書籍, 并令進納. 每卷給千錢, 及三百卷以上, 當量材錄用” (『宋大詔令集』 卷158)²⁰⁾하라고 하였다. 이로써 眞宗은 태종이 널리 의서를 수집한 정책의 전통을 계승하였고 이러한 작업은 황제가 바뀌어도 중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眞宗은 의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景德 3년(1006년)에 “禁用醫書與外國交換貨物”²¹⁾하라고 칙령을 내렸다. 이와 같이 태종 이래로 관직과 금전으로 의서를 수집한 정책을 기반으로 의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시켰다. 공납을 장려하고 의서의 외부 유출을 제한한 정책은 의서의 수집 활동을 더욱 촉진시켰다.

14) 李燾 撰. 續資治通鑑長編 卷192.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17*209.
 15) 李燾 撰. 續資治通鑑長編 卷192.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14*322.
 16)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81.
 17)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王懷隱傳 卷461.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88*472

18)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81.
 19) 丹波元胤 編. 中國醫籍考 卷45.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563.
 20)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81.
 21)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81.

仁宗 때에 이르러서는 선왕의 뜻을 계승하여 遺書를 수집하는 활동이 새롭게 발전하였다. 嘉佑 5년(1060년)에 이러한 일을 관리하는 購賞科를 전문적으로 설치하고 “以求獻書之路。應中外士庶之家，有收館閣所闕書籍，許詣官送納。如及五百卷，當議與文武資內安排，不及五百卷，每卷支絹一疋……如士庶之家，有收藏得上件書籍，及別更有奇書，令具名件卷秩，所撰人姓名年代，逐旋繳進聞奏。內在京者，仰于崇文院投納……當議依詔推恩”(『宋大詔令集』 卷158)²²⁾하게 하였다. 仁宗이 유서를 수집한 것은 唐 開元의 옛 기록과 비교한 것으로 따라서 의서는 여전히 구매한 예가 있다.

인종 이후에도 정부는 의서를 구매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神宗 元豐(1078~1085년) 연간에 “天下高手醫，各以得效秘方進…….”²³⁾할 것을 명하였다. 徽宗 政和 2년(1112년) 7월 壬申에 “訪天下遺書”²⁴⁾할 것을 명하였다. 政和 3년(1113년) 12월 癸丑에 “天下訪求道教仙經”²⁵⁾하라고 칙령을 내렸다. 이 두 칙령은 의서를 구하라는 것을 가리키지는 않았지만 천하의 유서에는 당연히 의약 유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밖에 고대의학은 도교양생 등과 밀접한 연계가 있으므로 도교의 仙經 중에 자연히 의학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政和 2년, 3년에 유서를 찾는 활동은 여전히 의서의 수집에 작용하였다. 政和 4년(1114년) 8월 30일, 徽宗이 제차 “……昔聖人求以醫藥，躋之壽域，仁政之急務也……其令天下應有奇方善術，許申納本州，逐旋繳進以聞”(『宋大詔令集』 卷29)²⁶⁾하라고 칙령을 내렸다.

이상을 종합하면 北宋시대에 정부가 의서를 구매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연관되었고, 이러한 정책은 각

시기마다 반복하여 강화되고 지속적으로 관철되었다. 북송시기에는 모두 9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5명의 황제가 의서를 구매하는 詔를 10차례나 공포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은 역사적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황제들은 조령을 공포하고 인력과 재력을 구비하여 의서를 수집하였는데 이는 북송 특유의 의정이다. 북송시기에 모두 어느 정도의 의서를 수집하였는지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북송정부가 채택한 포상 시책에서 보면 대량의 醫籍이 정부에 의해 구매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의학사적의 대량 수집은 진일보된 정리, 편찬, 반포에 가장 중요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2) 醫籍의 교정과 정리

송 정부는 의서를 널리 수집한 것을 기초로 역사상에 전해 내려온 의약서적에 대해 자세히 교정하고, 이미 유실된 의적에 대해 정리, 복원하여 의학서적을 판각하여 간행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다졌다. 개괄하면 의서의 교정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몇 단계로 나뉜다.

① 宋初에 의서를 교정하기 시작함

송대 초기에 의서를 교정하는 총체적인 원칙은 먼저 실용이고 나중에 계통을 세우는 것으로 사회에 절박하게 필요한 본초약물을 먼저 교정하였다. 따라서 開寶 6년(973년) 태조가 “尙藥奉御劉翰，道士馬志，翰林醫官翟煦，張泰，王從蘊，吳復珪，王光祐，陳昭遇，安自良等九人，詳校諸本”²⁷⁾하라고 조칙을 내렸다. 중점은 唐代 『新修本草』에 대해 陳藏器的 『本草拾遺』 등을 참조하여 校勘，整理하는 것이다. 이번 교정으로 송대 본초를 편찬하는데 기초가 되었으며 본초서가 되도록 빨리 세상에 나오도록 촉진시켰다. 그러므로 태조가 詔를 내린 조치는 실용에 따른 원칙이었다.

太平興國 6년(981년) 10월 丙戌에 太宗이 “校歷代醫書.”²⁸⁾할 것을 명하였다. 즉 역대로 유전된 의적에 대해 계통적으로 교정함으로써 의적을 편찬하기 위

22) 梁峻 .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81.

23) 永塔 撰. 四庫全書總目 卷103, 欽定文淵閣四庫全書總目.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217.

24)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卷21.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80*301.

25)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卷21.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80*303.

26) 梁峻 .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82.

27) 丹波元胤 編. 中國醫籍考 卷10.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92.

28)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卷4.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80*125.

한 준비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계통적인 교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부족하여 조직의 규모와 교정하는 의적은 알 수 없지만, 송대에 『雍熙神醫普救方』 등의 저작이 세상에 나온 것은 송대 초기의 교정 작업과 관계가 없지 않다.

② 天聖·皇祐(1023~1054)연간에 의서 교정 작업이 발전함

송대 초기에 의서를 교정한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아서 많은 의적이 여전히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 착오된 부분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았다.

天聖·皇祐 시기에 정부는 전후 3차례에 걸쳐 의서를 교정하였는데, 이 3차례 교정은 經典에 중점을 두었다. 天聖 5년(1027년) 4월에 “先是, 上(仁宗을 가리킴)謂輔臣曰: ‘世無良醫, 故夭橫者衆, 甚可悼也.’ 張知白對曰: ‘古云書雖存, 率多舛謬, 又天下學醫者不得盡見.’ 上乃命醫官院校定黃帝內經素問及難經病源等, 下館閣官看詳. 乙未, 詔國子監摹頒行. 又詔翰林學士宋綬撰病源序”²⁹⁾하였다.

景祐 2년(1035년) 7월에 仁宗은 다시 “命丁度等教正『素問』”³⁰⁾하도록 명하였다. 이때에 교정한 상세한 정황에 대한 기재는 별로 없다. 丁度는 翰林學士이지만 醫官은 아니어서 기록에 의하면 “父逢吉, 以醫事眞宗于藩邸, 官至將作監丞致仕”³¹⁾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면 그 역시 의학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당시 『素問』 교정은 그가 책임졌거나 혹은 손수 교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皇祐 三年(1051년) 남부에 瘴癘가 유행하였고 의서가 모자라는 실정을 겨냥하여 정부는 또한 殿中丞校勘醫書官인 孫兆에게 명하여 『外臺秘要』를 교정하게 하였다.

이상으로 仁宗 天聖에서 皇祐시기까지 3차례에 걸쳐 의서를 교정하는 작업을 전개하여 經典 혹은 학술

성이 강한 저작을 교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校正醫書局에서 교정 작업을 대규모로 전개하는데 경험이 되었다.

③ 醫書 校正이 대규모로 전개됨

宋·嘉祐 2년(1057년) 8월에 樞密使 韓琦가 仁宗에게 上奏하길 “醫書如『靈樞』, 『太素』, 『甲乙經』, 『千金』, 『外臺秘要』之類, 本多訛舛, 『神農本草』, 雖開寶中嘗命官校定, 然其編載尙有所遺, 請擇知醫書儒臣與太醫參定頒行. (仁宗)乃詔: ‘即編修院置校正醫書局, 命直集賢院、崇文院檢討掌禹錫等四人, 并爲校正醫書官.’”³²⁾하게 하였다.

韓琦는 최초로 교정의서국 提舉를 맡았다. 이후 또한 范鎮, 錢象先이 잇따라 이 직책을 이었다. 掌禹錫, 林億, 張洞, 蘇頌 등 4명이 관리업무로 주로 맡았고, 의서를 구체적으로 교정한 사람으로는 秦宗古, 朱有章, 孫兆, 孫奇, 高保衡, 陳檢, 單驥 등이 있었다. 교정한 의서로는 『素問』, 『甲乙經』, 『本草圖經』, 『脈經』, 『傷寒論』, 『千金要方』, 『千金翼方』, 『外臺秘要』, 『金匱要略方論』, 『金匱玉函經』, 『嘉祐補注本草』 등이 있다.

위의 書目 가운데 『圖經本草』와 『嘉祐補注本草』 등은 교감을 기초하여 크게 증보시킨 것 이외에 나머지 書目은 주로 校勘하여 訂正한 것으로, 이러한 의서에 대한 교정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素問』에 대한 교감은 “正謬誤者六千餘字, 增注義者二千餘條, 一言去取, 必有稽考.”³³⁾하였다. 의학서적을 교정하는 작업은 熙寧 2년(1069년)에 대체로 마무리 되었으나 발행 작업은 조금 늦어져 대략 紹聖 3년(1096년)에 정식으로 완성되었다.

교정의서국의 성립은 醫政史에 있어서 최초의 시도였고, 인력과 재력을 집중하여 古典醫籍을 계통적으로 교정하고 간행함으로써 의학지식의 전파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는 송대 醫政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29) 李燾 撰. 續資治通鑑長編 卷105.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15*625.

30) 王應麟 撰. 玉海 卷63.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944*651.

31) 司馬光 撰. 涑水記聞 卷10. 文淵閣四庫全書·子部·小說家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1036*408.

32) 李燾 撰. 續資治通鑑長編 卷186.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17*288.

33) 王水 次注 林億 等校正. 黃帝內經素問 校正黃帝內經素問原序 卷186. 文淵閣四庫全書·子部·醫家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733*5.

④ 徽宗에서 남송에 이르기까지 의학서적의 교정 작업은 계속됨

교정의서국에서 醫籍를 대량으로 교정하여 반포한 후 의학지식의 전파가 진일보 하였다. 徽宗이 집권 이후부터 남송 말기까지 의서를 교정하는 작업은 교정의서국 때의 규모보다는 못하지만 여전히 진행되었다.

政和 8년(1118) 4월 24일에 “宣和殿大學士寶篆宮使蔡攸言：‘窺考內經所載，皆道德性命之理，五行造化之妙。唐有王冰者嘗以意輒有增損，故所傳失真。本朝命儒臣校正，然與異同之說，俱無所去取，錯亂失次。學者疑惑，莫知折中。今建學俾，專肄業，親酒宸翰，作為一經，伏望特命儒臣精加刊正……詔依奏送禮制局。五月十三日，太師魯國公蔡京言：‘奉詔禮制局選建官吏校正內經…….’”(『宋會要輯稿』第五十五冊 崇儒四)³⁴⁾ 할 것을 주청하였다. 이로써 정부가 의학 경전에 대한 교정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당시 太醫局方、本草書 등에 대해 몇 차례 교정하였다. 政和 2년(1112)에 尙藥局의 盧稔에게 『태의국방』을 교정하도록 명하였다. 그 후 陳師文、裴宗元、陳承 등에게 명하여 원래 太醫局方을 訂正、增刪하게 하였다. 嘉定 원년(1208)에는 太醫助教 檢査惠民局 관원인 許洪이 『太平惠民和劑局方』을 교정하고 주석하였다. 政和 6년(1116)에는 曺孝忠 등이 명을 받들어 『聖濟經』을 교정하였다. 紹興 29년(1159)에는 檢閱校勘官 兼 太醫局 교수인 高紹功、柴源、張孝植 등이 『政和本草』 등을 교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의서의 교정은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송대 정부는 의학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인력을 동원하여 대규모로 의서를 교정하고 정리하였다. 특히 교정의서국을 설립하여 의학문헌을 교정, 편찬, 반포함으로써 의학지식의 전파를 촉진시키고 의학의 발전을 추동하였다.

(3) 의서 편찬에 있어서 정부의 작용

34)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83.

송대 정부는 의학 遺書를 널리 수집하고 대량으로 교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의학서적의 편찬 작업에도 관심을 가졌다. 먼저 본초의 편찬 방면에 있어서 開寶 6년(973년)에 劉翰, 馬志 등이 칙령을 받들어 『신수본초』를 기초로 『本草拾遺』를 참조하여 修訂하고, 扈懔, 盧多遜 등의 勘定을 거쳐 『開寶新詳定本草』를 만들었다. 다음해(974년) 劉翰, 馬志가 이를 다시 증가시키고 李昉, 王祐, 扈懔 등이 다시 상세히 살펴 『開寶重定本草』를 간행하였다.

嘉祐 연간에 掌禹錫, 林億 등이 『開寶重定本草』를 기초로 증보하여 만든 『嘉祐補注神農本草』와 蘇頌이 편찬한 『本草圖經』이 있었다. 政和 6년(1116년)에 曺孝忠 등이 『大觀本草』를 기초로 정리, 편찬하여 『政和新修經史證類備用本草』를 만들었다³⁵⁾. 紹興 27년(1157년)에 高紹功, 柴源, 張孝直 등이 『政和本草』를 기초로 교정, 편찬한 『紹興本草』 등의 본초서가 저작, 편찬되어 세상에 나왔다³⁶⁾.

다음으로 크고 작은 방서의 편찬으로는 賈黃中, 李宗訥 등이 편찬한 『神醫普救方』이 있었고, 王懷隱, 陳昭遇, 王祐 등이 편찬한 『太平聖惠方』이 있었고, 周使應 등 의관이 편찬한 『簡要濟衆方』, 『慶歷善救方』이 있었고, 여러 번 수정하고 내용과 서명이 비슷한 일련의 『和劑局方』이 있었고, 정부가 주관하여 편찬한 『聖濟總錄』 등이 편성되어 세상에 나왔다³⁷⁾. 이밖에 王惟一이 명을 받들어 편찬한 『新鑄銅人臉穴鍼灸圖經』이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주관하거나 의관에게 칙령을 내려 편찬한 의서의 수량은 송대가 각 왕조들 중에서 가장 많았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정부가 지원한 것 이외에 황제가 직접 정리, 편찬(太宗·徽宗)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의서의 편찬은 의학지식의 총결, 교류를 촉진시켜 의학발전을 추동시켰다.

35)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 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322.

36)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 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322.

37)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 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322.

(4) 의약문헌의 간행

송대 정부는 의학을 중시했기 때문에 의서를 수집, 정리, 교정, 편찬을 바탕으로 하여 의서의 판각, 반포에도 힘을 기울임으로써 의서가 대량으로 세상에 전해지게 하였고 의학지식을 전파, 보급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송대 정부가 의서를 판각, 간행하여 의학지식을 보급하는데 다음과 같은 3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당시에 있었던 의서에 대해 즉 정부가 주관하여 편찬한 의서와 교정한 전대의 의서 및 소수의 개인 저작 모두 판각하여 간행하였다. 校正醫書局에서 刊刻한 의서 이외에 官刻본이 있었다. “宋時官刻書有國子監監本，歷朝經史子部見于諸家書目者，不可悉舉，而醫書尤其所重。”³⁸⁾하였다.

둘째, 小字로 다시 새겨 판매가격을 내렸다. 醫生 개인이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송 정부는 元祐 3년(1088년) 8월에 『傷寒論』, 『太平聖惠方』 등과 같이 冊數가 많고, 책값이 비싸고, 민간에서 비치하기 어려운 다섯 부의 의학서적에 대하여 “命國子監別以小字雕印.”³⁹⁾하게 하였다. 또한 “廣行印造，只收官紙工墨本價，許民間請賣，仍送諸路出賣。”(『宋代刻印傷寒論敕文』)⁴⁰⁾하게 하였다. 紹聖 元年에서 3년(1094~1096년)까지 정부는 또한 『嘉祐補注本草』, 『本草圖經』, 『脈經』, 『千金翼方』, 『金匱要略方論』 등을 小字로 다시 새기고 판매 가격을 내렸다(宋·向宗恕等 『宋刻脈經牒文』)⁴¹⁾. 小字刻本の 의서가 간행됨으로써 의서가 더욱 널리 유전되도록 하였다.

셋째, 백성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의약조치로 의학 지식을 보급하였다. 송 정부가 의학 지식을 전파하는데 유리한 수많은 조치를 취하였지만, 벽지와 가난한 병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여

러 차례 명령을 내려 각지에 백성의 의약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백성들의 의약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慶歷 6년(1046년)에 仁宗은 福建省 閩俗에 관하여, 그들이 醫보다 巫를 믿어 환자들이 무당을 믿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정황에 근거하여 “……酌其便于民用者，得方六千五十六……謄載于版，列牙門之左右”⁴²⁾하게 조령을 내렸다. 그리고 이것은 刺史의 주요한 직책이라고 강조하였다. 皇祐 元年(1049년) 2월 28일에 王安石은 『善救方』을 읽고 “謹以刻石，樹之縣門外左，令觀赴者自得……”⁴³⁾하게 하였다. 이밖에도 『集驗方』을 간행한 판본과 같이 “刻鍼灸經于石.”⁴⁴⁾하는 조치도 전국 각지에 일부 있었다.

이상의 3가지 조치는 의학지식을 전파 보급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송대에 간각하여 반포된 저작은 매우 많았다. 통계가 불완전하지만 적어도 28부가 있었다. 아래와 같이 【표 1】로 나타내었다.



38) 潘衍桐. 書林清話 卷3 叢書集成續編·第66冊·史部. 上海. 上海書店. 1990. p. 111.
 39)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84.
 40)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84.
 41)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84.

42) 丹波元胤 編. 中國醫籍考 卷45.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565.
 43) 王安石 撰. 臨川文集 卷84.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1105*704.
 44) 丹波元胤 編. 中國醫籍考 卷21.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51.

分類	書名	卷數	分類	書名	卷數
醫學理論著作	黃帝內經素問	24	方書	太平聖惠方	100
	難經	5		神醫普救方	1000
	傷寒論	10		慶曆善救方	1
	金匱玉函經	10		簡要濟衆方	5
	金匱要略方論	10		外臺秘要方	40
	脈經	10		備急千金要方	30
	諸病源候論	50		千金翼方	30
	聖濟經	10		太醫局方	3
本草著作	開寶新詳定本草	20	其他	和劑局方	5
	開寶重定本草	20		聖濟總錄	200
	嘉祐補注神農本草	20		集驗方	1
	圖經本草	20		南陽活人書	20
	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30		四時攝生論	1
鍼灸著作	黃帝鍼經	9			
	新鑄銅人腧穴鍼灸圖經	3			

표 1. 宋代에 頒布·刊行한 醫學書籍 一覽表

결론적으로 송 정부가 의학문헌의 수집, 교정, 편찬, 반포한 작업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송 이전의 의약문헌이 이 시기에 광범하게 수집되고 또한 계통적으로 교정, 정리, 반포하여 유전되었다. 동시에 이 시기에는 새로운 의약저서가 편찬, 간행되어서, 의서의 교정, 편찬, 간행작업에 이전에 없던 국면이 나타났다. 따라서 의학지식의 보급을 촉진시키고 또 의학의 발전을 추동시켰다.

3) 약물학 발전에 대한 정책

송대 정부는 의약발전을 중시하여 특히 太祖, 太宗, 徽宗 등은 자신이 의술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때문에 의약발전을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조치를 제정하였고, 특히 약물의 발전을 중시하는 조치로 본초약물의 조사, 약품의 가공과 修制, 경영관리 등이 크게

발전하였다.

(1) 본초 저작의 수정과 반포

본초 저작의 수정과 반포에 대해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송대 의학저작에 대한 교정과 반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문자를 교정하고 오류를 정정한 것뿐이고, 그 내용을 첨삭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지만 유독 본초저작의 수정은 예외였다. 본초저작을 수정할 때에는 기타 의적을 수정할 때 채택한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물을 널리 조사하여 대량으로 增刪하였다. 仁宗 嘉祐 3년(1058년)에 조령을 내려 “天下郡縣, 圖上所產藥, 用永徽故事, 重命編述……并強調各注開花, 結果、採集季節送京, 對進口藥須詢問市舶客商.”⁴⁵⁾하게 하였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약물을 널리 조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수정하여 만든 『嘉祐補注本草』에는 새롭게 증가시킨 약물이 82종이고 수집한 약물은 모두 1082종이었다.

(2) 王安石의 變法이 “成藥” 발전에 미친 영향

“成藥”으로 치병한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내경』에 丸, 散, 膏, 丹의 제형이 이미 있었다. 晉代 葛洪은 『肘後備急方』에 “成藥劑”를 두어 “成藥”의 명칭을 정식으로 명확하게 하였다. 그러나 “성약”이 가장 발전한 것은 송대로 꼽을 수 있다.

송대 “성약”이 성행한 것은 왕안석의 변법에서 “市易法”의 실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神宗시대 왕안석이 제정한 변법의 “市易法”에 약물을 국가의 전매품으로 규정하였다. 이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熙寧 9년(1076년) 5월에 神宗이 영을 내려 기존의 熟藥庫, 合藥所 등을 없애고 市易務賣藥所를 합병하여 賣藥所를 만들었는데 또한 熟藥所라 명명하였다⁴⁶⁾.

“成藥”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책임지고 太醫局에 소속되었다. 태의국 의생의 지도 아래 熟藥所가 생산한 “성약”은 품질은 뛰어났으며 판매량도 많았

45) 唐慎微 撰, 證類本草 卷1. 文淵閣四庫全書·子部·醫家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740*8.

46)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 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319.

다. 일 년 사이(熙寧9년 6월에서 10년 6월까지)에 “收息錢二萬五千餘緡, 計信息.”⁴⁷⁾이었다.

徽宗 崇寧연간(1102-1106년)에 熟藥所는 太府寺에 속해 있었다. 崇寧 2년(1103년)에는 속약소에 제약과 매약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매약소가 5곳으로 증설되었고 2곳의 修合藥所를 설치되었다. 같은 해 5월에 吏部尙書 何執中은 熟藥所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市易務가 있는 곳에는 모두 外局을 설치하고 시역무 혹은 抵當庫監官이 겸하도록 건의하였다. 이 건의는 徽宗의 비준을 거쳐 각지에 수많은 속약소가 잇달아 세워졌다. 휘종은 각 州郡의 生藥材를 汴京에서 만든 成藥과 바꾸는 것도 윤택하였고, 또한 각 지역의 백성들이 州縣의 賣藥所에서 “성약”을 구입하여 매매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와 같이 국영의 제약, 매약 업무가 거의 모든 약물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私營 藥국의 영업이 점차 쇠퇴하였다.

政和 4년(1114년)에는 尙書省을 거친 건의가 徽宗의 동의를 얻어 修合藥所가 “醫藥和劑局”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賣藥所도 “醫藥惠民局”으로 개명되었다⁴⁸⁾. 이 시기에 惠民局이 역병의 예방과 치료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정부는 매년 제약, 매약을 통하여 40여 萬緡의 이득을 올렸다.

각지에 매약소가 점차 세워지고 “성약”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成藥藥方을 수정 편찬하는 작업도 전개되었다. 元豐 (1078~1085)시기에 명하길 “天下高手醫, 各以得效秘方進, 下太醫局驗試, 依方制藥鬻之, 仍摹本傳于世.”⁴⁹⁾하라 하였다. 『郡齋讀書志』에 의하면 『太醫局方』 3권은 바로 이 시기의 산물이며 속약소에서 초기에 底本으로 삼았다.

大觀(1107-1110)연간에 陳承, 陳師文, 裴宗元 등은 칙령을 받들어 『局方』을 교정, 增刊하였는데, 수정하는 까닭과 상황을 그들의 “上表”에서 설명하였다. 즉

“自創局以來, 所有之方或取于鬻藥之家, 或得于進獻之士, 未經參訂, 不無舛訛, 雖嘗鏤版刊行, 未免傳疑承誤, 故有藥物脫漏, 殊兩過差, 制作多不依經, 祖襲間有僞妄……頃因條具上達朝廷, 繼而被命, 遴選通醫, 俾之刊正. 于是請書監之秘文, 兼名賢之別錄, 公私衆本, 搜獵靡有, 事闕所從無不研核. 或端本以正末, 或溯流以尋源, 訂其訛謬, 析其淆亂, 遺佚者補之, 重複者削之, ……”⁵⁰⁾하였다. 수정한 후에 서명을 『和劑局方』이라 하였다. 이 이후에 政和연간에 다시 한 차례 교정, 刪補하였다. 『盧太醫墓志』의 기재에 의하면 “盧尙藥諱 稔, 世家霸州文安⁵¹⁾, 今爲大名人⁵²⁾. 以方伎名河朔, 泰和二年(1112)補太醫奉御, 被旨校正『和劑局方』.”⁵³⁾하였다. 그러나 수정한 자세한 사항에 대한 기록은 없다. 官修한 『화제국방』은 “성약”의 제약 규범을 초보적으로 통일시켜 의학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국방』에 대한 후인의 평가에 따르면 관청에서 이를 법으로 삼아 지키고 의학계에서는 이를 전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고, 병자는 이것에 의거하여 생명을 의탁하였고, 세인은 이것을 익히는 것이 풍속이 되었다.

“성약” 사업을 신속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조직관리, 품질감독, 효과와 제고 등 여러 방면에 따라 조치를 취하였다. 관리상에서 局에 각 급의 관원들을 두어 “성약”의 모든 제작과 판매 과정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 太府寺에 전문적 관원을 한 명 두어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정부는 먼저 “성약”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먼저 생약 구입을 책임지는 戶部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관리하였고, 崇寧 때에는 “收買藥材所”을 설치하여 가짜 약재가 범람하는 폐단을 막았다⁵⁴⁾. 다음으로 정부는 창고에 보관된 약재 가운데 부패되고 변질된 약재를 즉각 처리할 것을 특히 강조하였다. 紹興 26년(1156) 10월 21일에 조령을 내려 惠民和劑局, 倉戶

47) 李燾 撰. 續資治通鑑長編 卷289.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19*35.
48)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 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319.
49) 丹波元胤 編. 中國醫籍考 卷46.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582.

50) 王執中 撰. 鍼灸資生經. 文淵閣四庫全書·集部·別集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742*231.
51) 이곳은 현재 하북성 霸縣·文安縣 일대이다.
52) 大明은 현재 하북 대명이다.
53) 元好問. 遺山集 卷24. 文淵閣四庫全書·集部·別集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1191*274
54)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87.

部에 위임하여 검사를 통해 손상되고 묵은 약재를 폐기 처분했다.

이 이외에 각종 제형의 제작도 전문가를 지정하여 만들었고 “성약”은 반드시 검사를 거쳐 합격한 후에 판매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성약”의 품질을 보장하였다. “성약”의 효력과 경제적 이익을 제고시키기 위해 熟藥所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민간의 경험 처방을 수집하였고, 약물의 炮制, 藥劑의 修劑의 연구에도 종사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제조법을 개선하였다. 환약을 만드는 제조 방법에는 水, 醋, 酒, 蜜, 甘草膏, 阿魏膏, 阿膠, 豬膽, 豬胰 등이 있다. 코팅 방법으로는 金箔, 銀箔, 青黛, 朱砂衣 등이 있다. 그 이외에 약국에서 주야로 약을 판매하는데 만약 직무를 태만하게 하여 急症 환자가 약품을 구입하지 못하면 장형 100대의 처벌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송대에 황제와 대신들은 의약을 중시하였고 게다가 王安石의 變法人 “市易法”의 실시 등 외재적인 요인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약” 사업이 신속하게 발전되었다. “성약”의 대량 사용으로 특히 잘 팔리는 약국에 표시된 약품의 효능과 임상경험의 누적은 의약학의 진보를 상당히 촉진시켰다. “성약”의 제조와 판매에 따라 생긴 和劑局, 惠民局 등은 “성약”의 발전을 보증하였다. 정부의 수입이 대량으로 늘어난 것 이외에 역병이 유행할 때 약물을 공급하고 瘴藥을 제조하는 등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후기에 이르러 경영관리에 일부 문제가 있어 심지어 和劑局이 “和吏局”, 惠民局은 “惠民局”이라 풍자하였지만⁵⁵⁾,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기구들은 “성약” 사업의 발전에 적극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4) 정부 정책이 의학발전에 미친 영향

정책적인 작용이 전반적인 의학발전을 촉진시키거나 장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하였다. 송대 정부가 의서를 교정, 반포하고, 의학지식을 보급하고, 본초를 널리 조

사하고, “성약” 사업을 발전시키는 등의 방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한 것 이외에 內經, 鍼灸 등과 運氣學說의 발전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이를 촉진시키는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나 학설의 발전에 좋은 정책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였다.

『내경』은 의학의 경전으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의학자들이 매우 중시했다. 송대에 황제들은 의술을 이해하고 있었고, 특히 徽宗 趙佶은 뛰어난 의학자였기 때문에 內經의 학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하여 몇몇 조치를 취하여 『내경』의 지위를 제고시켰다.

정부는 의서를 교정 반포할 때 『素問』을 잇달아 4차례 교정 반포하였기 때문에 널리 전파되게 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시켰다. 이 뿐만 아니라 徽宗은 직접 『내경』을 스스로 연구하고 이를 太學, 辟雍 학생들의 필독해야 하는 경전으로 삼았으며 또한 박사를 두어 가르치게 하였다. 휘종이 언제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政和 8년(1118년)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宋會要輯稿”에 두조가 나타난다. 하나는 政和 8년 4월 24일 宣和殿 大學士 寶籙宮使 蔡攸가 『내경』을 재차 교정 반포해야 하는 필요성을 언급한 때에 “竊考內經所載, 皆道德性命之理, 五行造化之妙……今建學俾肆業, 親酒宸翰作爲一經……”⁵⁶⁾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宸翰”은 『辭海』의 해석에 의하면 “帝王의 筆跡”이라 하였다. 다른 하나는 같은 해 9월 7일에 “尙書省言: 近奉御筆, 在學諸生兼治內經, 道經, 兼莊子, 列子, 未有博士教導, 欲太學辟雍各差通內經, 莊子, 列子二人充博士, 上從之”⁵⁷⁾(『宋會要輯稿』 職官28)라 하였다. 위의 두 사료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내경』을 太學, 辟雍에 설치하여 經으로 삼아 전수하고 尙書省에 주청하여 『內經』, 『莊子』에 능통한 박사를 둔 사실은 확실하다.

56)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88.

57)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88.

55)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 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320.

둘째, 4월 24일에 蔡攸가 親酒宸翰을 경으로 삼는다는 구절에서 휘종이 이 조치에 대해 조칙을 내렸거나 심사하여 비준했다는 기록이 4월 24일 이전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조치를 채택한 시점 역시 4월 24일 이전일 것이다. 또 같은 해 9월 상서성에서 근래에 御筆을 받들었다는 기록을 근거하여 이 조치를 실시한 시간도 일 년이 넘지 않는다. 따라서 『내경』을 太學, 辟雍 학생들이 배우는 여러 경전 가운데 하나로 확정한 시점은 휘종 정화 8년일 것이다. 휘종은 학생들에게 『내경』을 함께 배우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깊이 연구하여 많이 체득하였다. 重和 원년(1118) 11월 15일에 휘종이 명하기를 “朕閱內經, 考建天地, 把握陰陽, 其理至矣, 然相生相剋, 相形相制, 周流六虛, 變動不居非常理, 非常理所能究者, 唯天元玉冊盡之, 可令頒政府與校正所, 以內經考其常, 以玉冊冊其變. 庶幾財成其化, 輔助相其宜, 以詔天下後世.”⁵⁸⁾라 하였다. 貢士의 우열을 평가할 때 내경이론을 파악하는 정도도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휘종은 종종 貢士의 시험지를 직접 채점하여 내경에 정통한 자를 첫 번째로 승진시켰다. 종합하면 휘종 자신이 의학을 좋아해 『내경』을 깊이 연구하여 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집정할 때 『내경』은 대학, 벽옹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경전의 하나가 되었고 貢士의 우열을 평가할 때에도 『내경』을 연구한 것이 심사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내경』의 학술적 지위를 인정하고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의 『내경』에 대한 학습을 촉진시켰다. 이런 조치는 『내경』이론 자체에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지만 내경이론의 발전에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휘종시기의 정책조치는 『내경』의 발전을 촉진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침구학의 발전도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靈樞』에는 침구 이론과 실용 경험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으며, 당대 태의서의 의학교육에 침구는 독립된 학과로 삼았다. 송대에 이르러 침구학 또한 새로운 발전이 있었다. 그 특징은 2가지가 있다.

첫째, 침구는 일차 전면적으로 총결하여 鍼灸穴位를 통일시켰다.

둘째, 2개의 鍼灸銅人을 주조하여 經絡腧穴 교육을 형상화, 표준화하였다. 이 두 가지 작업은 모두 尙藥奉御인 王維一이 조칙을 받들어 완수한 것이다. “先是上以鍼砭之法, 傳述不同, 命尙藥奉御王維一, 考明氣血經絡之會, 鑄銅人式, 又纂集舊聞, 訂正訛謬, 爲『銅人腧穴鍼灸圖經』三卷, 至是上之, 摹印頒行……賜諸州.”⁵⁹⁾하였다.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널리 전파하기 위해 鍼灸經을 비석에 새겼고 비석의 표제는 宋·仁宗의 御書였다. 침구서적을 편찬하고 수정하는 동시에 “……上又以古經訓詁至精, 學者是執多失, 傳心豈如會目, 著碎不若案形, 復令創鑄銅人爲式, 內分臟腑, 旁注谿谷. 井榮所會, 孔穴所安, 竅而達中, 刻題于側. 使觀者爛然而有第, 題者渙然而冰釋.”(『銅人腧穴鍼灸圖經』夏竦序)⁶⁰⁾하게 하였다. 腧穴의 구조도 매우 정교하여 경혈 표면에 黃臘을 바르고 경혈 안에 수은으로 채워 혈에 따라 침을 놓을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에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요약하면 송대에 침구 혈위를 수정하여 통일시킨 것과 침구동인을 주조한 것은 황제가 관심을 가지고 조칙을 내려 완성되었다. 따라서 정책적 요인이 송대 침구학 발전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정부는 의학교육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설치에 대해 의약정책의 경향을 반영시켰다. 송대 이전 隋唐의 의학교육에서는 『傷寒論』과 運氣이론 등의 교육과정은 설치하지 않았다. 송대 王安石의 變法으로 의학교육에 三舍法을 행하는 기간에 方脈科에 『상한론』과정을 증설하였다. 이로써 『상한론』을 연구하는 의생이 많이 증가하여 『상한론』을 정리, 주석, 발휘한 저작이 점차 나오게 되었다⁶¹⁾. 예를 들면 孫兆의 『傷寒脈訣』, 韓祇和의 『傷寒微旨論』, 龐安常의 『傷寒總病論』, 朱肱의 『類證活人書』 등이 있다.

58)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88.

59) 王應麟 撰. 玉海 卷36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944*652.

60) 朱樞 撰. 普濟方 卷 409. 文淵閣四庫全書·子部·醫家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761*2.

61)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 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332.

많은 의생이 『상한론』을 연구하고 배웠던 또 다른 원인은 송대에 『상한론』을 교정, 반포함으로써 朝野의 의생이 구매하여 학습하고 연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송대 의학교육에서 『상한론』 과정의 설치 역시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회종시기에 運氣理論은 의학교육의 필수과목에 들어가 학생들이 공부하게 하였고, 考試에도 運氣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있었다⁶²⁾. 회종은 『聖濟經』, 『聖濟總錄』에서 운기이론을 대량으로 운용하여 醫理를 논하였다. 이와 같이 운기학설의 연구는 회종시기에 고조되어 의료계에 차츰 형성되었다. “不讀五運六氣, 檢遍方書何濟?”⁶³⁾라는 말이 줄곧 금원시기까지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정책적인 요인은 학문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의학에 대한 송 정부의 모든 정책은 임상과 기초를 함께 중시하였다. 임상적 측면에서 주로 “성약”의 개발운동과 침구기술의 제고 등을 주로 중시하였고, 기초분야는 의서를 교정출판하고 의학지식 보급에 주로 나타난다. 기초이론을 여러 차례 교정 반포한 의서로는 『素問』, 『難經』 등이 있다. 의학교육의 교과과정에서 기초이론의 비중이 비교적 커졌다. 이상의 요인으로 송대에 기초이론을 중시하는 추세가 생겨나 謝觀은 “唐以前之醫家, 所重者術而已, 雖亦言理, 理實非其所重也. 宋以後之醫學, 乃以術爲不可, 而必推求其理, 此自宋以後醫家之長.”⁶⁴⁾라 하였다. 송대에 의학 이론 연구를 중시한 것은 의학발전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진일보 발전하여 금원시대 의학의 학술논쟁을 일으켰다.

5) 宋代는 唐代의 醫事 律令을 계승, 발전된

수당시기에 律學이 발전함에 따라 醫藥管理에 제도화, 법률화하는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醫

事律令에 관하여 唐代의 전문적인 책이 전해 내려오지 않지만 『唐律』에 산재된 醫事律令이 『宋刑統』에 대량으로 답습되어 있다⁶⁵⁾. 어떤 조문은 원래의 그대로 어떤 조문은 수정 보완하여 송대 의사율령의 기본 조항을 구성하고 있다.

이 밖에 다른 왕조들과 마찬가지로 송대 황제들은 의약과 관련된 조령을 자주 공포했으며 이러한 조령은 의약법률에 대한 보충과 수정이다. 원래 조문의 내용이 황제가 최근에 공포한 조령과 상충될 때에는 황제의 조령을 기준으로 삼았다. 상술한 원인으로 宋代의 醫事律令은 唐代에 비해 많이 발전하였다. 아래에 계승과 발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1) 宋代는 唐代의 醫事 律令을 계승한 상황

송대에 계승한 『당율』에서 의사율령에 관한 내용은 모두 송대 율서인 『宋刑統』에 기재되어 있다. 불완전한 통계이지만 唐律을 답습한 이 책의 醫事律令에서 적어도 27조가 그대로 베끼거나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글자만 조금 바꾼 것이다. 예를 들면 『宋刑統』과 『唐律』 두 책의 詐僞律에는 모두 “諸醫違方詐療疾病而取財物者, 以盜論.”⁶⁶⁾이라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두 律書의 기재가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다.

따라서 『당율』에 제정되어 실시한 의사율령은 대부분 송대에도 답습되고 관철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율령은 이미 隋唐五代 醫政史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개괄하였다. 송대에 당대의 의사율령을 계승한 것은 주로 아래 몇 가지 방면이다.

① 醫事 律令

의사가 처방을 어기고 허위로 병을 치료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는 절도로 논죄한다. 질병을 사칭하고 死傷하고 檢驗을 부실하게 하면 사기로 1등을 감한다. 실제 질병으로 사망하고 상해가 있는데 사실대로 검사하지 않은 자는 고의로 사람에게 죄를 씌운 죄로

62)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89.

63) 張倬 撰. 傷寒兼證析義.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783*772.

64) 謝觀. 中國醫學源流論 唐宋學說之異. 臺北. 古亭書屋, 民國59. p. 19.

65)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 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p. 317-322.

66) 李林甫 等撰. 唐律疏義 卷25.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72*314.

논한다. 丁匠이 勞役 중에, 防人이 防備 중에, 官戶나 노비가 질병에 걸렸을 때, 主司가 치료할 의약을 요청하여 치료하지 않은 자는 笞刑 40대에 처한다. 그로 인해 죽으면 1년 형에 처한다. 전쟁이 나가거나 公使를 행하다가 죽으면 死에 따라 고향으로 보내는데, 어기고 보내지 않은 자는 杖刑 100대에 처한다. 만약 다쳤거나 병들었는데 치료와 음식에 부족함이 있으면 杖刑 60대에 처한다. 그로 인해 죽으면 1년 형에 처한다.

② 약에 관한 율령

황제를 위한 약의 조제에 잘못이 있으면 의생은 絞首刑에 처한다. 약의 조제에 선택이 정밀하지 못하면 徒刑에 처한다. 의생이 일반 백성에 대한 조제에 잘못을 범하면 도형에 처하고, 독약을 매매하여 독약으로 살인하게 되면 교수형에 처하고, 독약을 매매하였으나 독약으로 살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流刑 2천리에 처한다.

③ 음식위생에 대한 율령

御膳을 만들 때 食禁을 범하면 교수형에 처하고, 잘못하여 雜藥을 가지고 御膳所에 가면 교수형에 처한다. 百官의 膳食을 바칠 때 食禁을 어기면 정황에 따라 처벌한다. 脯肉에 독이 있으면 빨리 태워야 하는데 일부러 치사케 하면 교수형에 처한다.

④ 위생보건에 대한 율령

同姓끼리 혼인하는 자는 각기 徒刑 3년에 처한다. 위아래 친족관계(總麻)이면 姮으로 논한다. 아내에게 중한 질병이 있어 버린 자나 狂犬을 죽이지 않은 자는 태형 40대에 처한다. 물건을 다른 사람의 귀, 코, 음기에 넣어 지장을 주었다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만약 고의로 입고 쓰고 먹을 것을 빼앗아 그로 인해 사람을 상하면 각각 폭력과 살상 죄로 논한다.

⑤ 傷害의 輕重으로 판결하는 율령

사람을 구타한 자는 태형 40대에 처하고, 기타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 상해 입힌 자는 杖刑 60대에 처하고, 뿔한 머리털이 사방 일촌이 넘으면 장형 80대에 처하며, 만약 귀와 눈에서 출혈이 있거나 내장이 손상돼 피를 토하는 경우 각각 2등을 보탠다. 구타하여 이를 부러뜨리거나, 귀나 코를 훼손시키거나, 눈

하나를 멀게 한 경우,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부러지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끊는 물로 화상을 입힌 자는 徒刑 1년에 처한다. 치아 두 개나 손, 발가락 두 개 이상을 부러뜨린 자나 머리를 삭발시키면 도형 1년 반에 처한다.

⑥ 죄인에 대한 의약 율령

수감된 죄인에게도 의복, 음식, 의약품을 제공해야 한다. 수감된 죄인에 병이 있으면 고문을 할 수 없다. 임신 중인 범인은 출산 후에 다시 형을 집행한다.

(2) 宋代는 唐代 이래의 醫事 律令이 발전함

위에서 서술한 바에 의하면 송대는 의사 율령에 있어서 먼저 唐律의 의사 율령과 관련한 조항을 계승하여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하였다. 동시에 송대의 사회적인 상황과 唐律에서 완비되지 못한 부분에 근거하여 수정함으로써 당대 이래로 의사율령의 조문과 내용을 발전시켰다. 개괄하면 주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방면이 있다.

① 의생을 선발하고 임명하는 형식이 다양해지고 표준이 엄격해짐

수당시대에는 의생의 도덕적인 요구, 선발조건, 상벌심사 등에 관하여 대체적인 율령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의생의 관리를 강화시키는데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 송대에 이르러 당대 제정한 이러한 제도와 조항은 기본적으로 계승되고 실시되었다. 이 이외에 새로운 규정도 만들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의생을 선발하는 형식이 다양화하였고, 둘째 의생의 표준이 엄격해졌다.

의생을 선발하는 형식이 송대는 당대에 비해 더 많아졌다. 당대에는 일반적으로 生徒, 貢舉, 制舉 등의 방법으로 의생을 선발하였다. 송대에 의생을 선발하는 주요 방법으로는 학교교육으로 三舍選試였다. 그러나 송대는 국내 제도가 자주 바뀌어 일관성이 부족했고, 官과 職이 분리되어 각 분야의 사람들을 주도면밀하게 배치하지 못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송대에는 의생을 선발하는데 새롭지만 지속적이 못한 형식들이 많이 출현하였다. 예를 들어 송대 초기에 京城인 開

封에서 공개된 범위와 공개된 시험으로 채용한 의관을 翰林醫官院에 충당하였다. 雍熙 때에는 選送制를 실행하여 각 州에 명하여 명의를 太醫署로 불러들였고, 의술이 뛰어난 자는 翰林院으로 보내어 학문을 연구하도록 했다.

政和 시기에는 전국에 조령을 내려 천하의 의사들을 모셔와 봉록을 주었으며, 紹興 초기에 太史局에 명하여 시험을 통해 민간 의생을 모집하였다. 또한 乾道 시기에는 각 州의 醫職과 太醫局의 의생 등에 결원이 생기면 州, 縣에서 의술에 능통한 사람을 선임하였다. 이 밖에도 試補, 蔭補, 薦補 등의 법을 실행하였다.

송대에는 官職 분리 제도를 채택하여 일자리에 비해 사람의 수가 많았고, 수많은 의관들이 연령과 자질에 따라 武官 品級으로 진급하였으나 의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혹은 수행하는 일이 매우 드물었다. 졸업한 의학생은 다시 일부 벼슬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翰林醫官院 등의 기구들은 자주 여러 형식을 통해서 특히 貢士방식으로 지방에서 많은 의생들을 모집하여 翰林醫官에 補正시켰다. 따라서 중앙의관이 과잉되고 지방의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송대에는 醫生管理에 있어서 혼란이 있었지만 의생을 선임하는 표준은 그래도 비교적 엄격하였다.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의생을 선발할 때는 일반적으로 고시를 거쳐야했다. 의관 시험에는 반드시 醫經과 本草를 넣었다.

至和 2년(1055년) 9월에 조령에서 “試醫官須引醫經本草以對, 每試十道, 以六通爲合格.”⁶⁷⁾하게 하였다. 의관 중에서 황제의 맥을 진찰하는 자를 선발할 때는 반드시 고시를 거쳐야했다. 治平 4년(1067년)의 조령에서 “提舉醫官院試堪診御脈者六人.”⁶⁸⁾ 하였다. 三舍選試에는 더욱 엄격한 과정의 고시가 있었다. 의생의 자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의생을 선임할 때 고시를 보다 엄격히 하여 책인 진 것을 이외에 기존의 의생들

에 대해서도 항상 심사하여 의술이 뛰어나지 못한 자는 면직 당했다. 예로 乾德 원년(936년) “閏月己酉朔, 校醫官, 黜其藝不精者二十二人.”⁶⁹⁾하였다. 乾道 3년(1167년)에 孝宗 아들의 병이 낫지 않자 그 주치의의생인 “東官醫官杜輯除名.”⁷⁰⁾하였다. 의생을 선임하는 엄격한 표준과 자격이 없는 의생에 대한 면직, 제명 등의 조치는 의생의 자질을 부단히 제고시켰다.

② 위생보건의 새로운 규정

위생보건의 방면에서 송대에 唐律의 관련 규정을 계승한 것 이외에 일부 새로운 保健律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어린이에게 거세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乾德 4년(966년) 6월에 조령으로 “土庶敢有闖重者不赦”⁷¹⁾하게 하였다.

둘째, 人身을 供犧하지 못 하도록 하였다. 太平興國 2년(977년)에 “殺人祭鬼及僧人置妻孥”⁷²⁾함을 금지하였다. 淳化 5년(994년) 司天, 陝西, 嶺南, 湖南에 사람을 죽여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금지하였고, 州縣에서 이를 붙잡거나 고발한 자를 포상하도록 하였다(이상 두 조문은 『宋史太宗本紀』에 나타난).

셋째, 날씨가 더우면 일을 줄인다. 景德 4년(1007년) 6월 더위가 심해지자 “罷京城工役, 遣使賜渴者藥.”⁷³⁾하게 하였다. 景德 4년(1007년) 6월 더운 여름에 京城에서 負役의 日課를 절반으로 줄였다(『宋史眞宗本紀』).

넷째, 嬰兒를 죽이거나 버리는 것을 금했다. 慶元 원년(1195년) 정월에 조령에서 “閩浙淮南江東路歉, 諸州收養遺小兒.”⁷⁴⁾하게 하였다. 같은 해 5월 또한

69)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卷12. 太祖紀一.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80*98.

70)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卷34.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80*454.

71)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卷12 太祖紀二.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80*102.

72)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91.

73)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卷7.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80*158.

74)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91.

67)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卷12.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80*219.

68)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卷14.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80*233.

조식을 내리길 “諸路提舉司置廣惠倉收胎養胎.”⁷⁵⁾하
라 하였다. 開禧 원년(1205년) 3월에 다시 아이를 유
기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고 有司에게 명하여 달마다
돈과 곡식을 주어 거두어 기르도록 하였다(이상은 『
宋史寧宗本紀』에 나타남). 위 조령이 실천된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조령의 내용으로 보아 송대
위생보건 방면이 진일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囚人에 대한 의약이 제고됨

봉건사회에서 囚人의 의약과 감옥의 위생은 통치
자가 표방하는 “仁政”의 하나로 역대로 중시하였다.
唐宋은 봉건사회의 흥성시기였기 때문에 죄인의 의
약에 있어서 비교적 완전한 율령을 제정하였다. 당송
사이에 많은 조항들이 일맥상통하며 이러한 내용은
『唐律』과 『宋刑統』에 반영되어 있다.

이 밖에 송대 황제들은 많은 조령을 공포하여 수
감된 죄인의 의약에 대해 보충하는 규정을 마련하였
다. 開寶 2년(969년) 5월에 황제가 더위가 몹시 심하
여 감옥에 있는 죄인의 고통을 염려하여 조령을 내려
“兩京諸州令長吏督獄椽，五日一檢視，酒掃獄戶，洗滌
扭械，貧不能自存者，給飲食，病者給醫藥，輕系即時決
遣，無淹滯.”⁷⁶⁾하게 하였다. 太平興國 3년(978년)에는
조령을 내려 “諸州郡暑月五日一滌囹圄，給飲漿，病者
令醫治.”⁷⁷⁾하게 하였고, 紹聖 4년(1097년)에는 “令諸
獄置氣樓涼窓，設漿飲薦席，扭械五日一洗，系囚以時
沐浴，遇寒給薪炭.”⁷⁸⁾하게 하였다. 또한 紹興 21년
(1151년) 6월에 高宗은 “歲給大理寺、三衙及州縣錢，
和藥劑療病囚”⁷⁹⁾하라고 명하였다.

송대 황제들이 수감된 죄인의 위생을 개선하는 시
책을 많이 제정하였으나, 徽宗이 취했던 시책이 더욱
효과가 있었다. 그는 獄吏의 昇級과 降給은 수감된

죄인의 사망 숫자에 따라 규정을 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獄吏로 하여금 더욱 많은 방법을 취하여 죄수의
생명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감옥의 위생업무가 철저
해지는 것을 촉진시켰다.

결론적으로 송대는 당대의 醫事律令을 계승한 것
을 기초로 새롭게 발전한 정황을 결합하여 새로운 율
령을 보완, 제정함으로써, 의약율령이 송대에 이르러
한 차원 높아지게 되었다.

6) 역병과 예방치료 대책

(1) 송대 역병의 발생상황

송대에도 역병의 발생이 매우 빈번하였는데, 『宋
史』에 근거하여 대략의 통계를 내어보면 이 시기에
적어도 42차례 역병이 발생하였다. 남송과 북송은 시
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남송시기에 역병이 비

교적 창궐하여 28차례에 이르러 송대에 발생한 역병
의 67%를 차지하며, 평균적으로 5년마다 한 차례의
역병이 발생하였다. 高宗에서 寧宗 사이가 특히 더
심하였다. 송대에 역병 발생한 상황을 『宋史』에 근거
하여 아래 【표 2】로 정리하였다.

75) 梁峻 .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91.

76)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卷407. 文淵閣四庫全書·史部·
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87*553.

77)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卷5.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
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80*132.

78)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卷1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
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80*279.

79)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卷30.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
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80*414.

諡號或廟號	年號	西紀	流行 狀況
太祖 趙匡胤	乾德 1년	963	癸亥, 湖南疫, 賜行營將技藥.
太宗 趙光義	淳化 3년	996	五月戊申, 詔太醫署良醫視京城病……
	淳化 5년	994	六月丁亥, 京師疫解. 六月, 京師疫, 遣太醫和藥救之.
眞宗 趙恒	咸平 6년	1003	五月, 京師疫, 分遣內臣賜藥.
	大中 2년 祥符	1009	四月詔, 醫官院處方并藥賜河北避疫邊民. 九月遣使賜戎漚軍民避瘴藥.
	大中 3년 祥符	1010	三月乙卯, 陝西民疫, 遣使蠻藥賜之.
仁宗 趙禎	慶歷 8년	1048	一月, 以河北疫遣使分藥.
	皇祐 1년	1049	二月戊辰, 以河北疫遣使分藥.
	皇祐 4년	1052	(十月)丁亥, 以諸路飢疫, 并徵除科調之煩……條陳救恤之術.
	至和 1년	1054	春正月, 壬申碎通天犀和藥以療民疫.
	嘉祐	1060	五月戊子朔, 京師民疫, 選醫給藥以療之.
神宗 趙頊	熙寧 9년	1076	乙亥, 以安南營將士疾疫……
哲宗 趙煦	元祐 4년	1089	杭州大旱飢疫并作, 遣使挾醫分坊治療, 作檀粥藥, 又作病坊.
徽宗 趙佶	大觀 3년	1109	江東疫.
高宗 趙構	建炎 1년	1127	三月, 金人圍汴京, 城中疫死者几半.
	紹興 1년	1131	六月, 浙西大疫……官募人能服粥藥之勞者, 活及百人者, 度爲僧.
	紹興 2년	1132	春, 涪州疫, 死數千人.
	紹興 3년	1133	永州、資榮二州均大疫.
	紹興 6년	1136	四州疫.
	紹興 16년	1146	夏, 行都疫.
	紹興 18년	1148	常州疫大作……
	紹興 26년	1156	夏, 行都大疫, 高宗出柴胡制藥, 活者甚衆.

孝宗 趙 禎(shen)	隆興 2년	1164	浙江飢民疫者尤衆.
	乾道 1년	1165	行都及紹興府飢民大疫, 浙西東亦如之.
	乾道 6년	1107	春, 民以冬燠疫作.
	乾道 8년	1172	夏, 行都民疫, 江西大疫, 隆興府民疫.
	淳熙 4년	1177	眞州大疫.
	淳熙 8년	1181	行都大疫, 寧國府民疫, 死者尤衆.
	淳熙 11년	1184	四月, 以臨安疫分命醫官診視軍民.
	淳熙 14년	1187	春, 都民禁旅大疫, 浙西郡國亦疫.
淳熙 16년	1189	潭州疫.	
寧宗 趙擴	慶元 1년	1195	行都疫, 臨安大疫, 出內帑錢爲貧民醫藥棺斂費及賜諸軍疫死者家.
	慶元 2년	1196	五月, 行都疫.
	慶元 3년	1197	三月, 行都及淮浙郡縣疫.
	嘉泰 3년	1203	五月, 行都疫.
	嘉定 1년	1208	夏, 淮甸大疫, 浙民亦疫, 官募掩骼及二百人者度爲僧.
	嘉定 2년	1209	夏, 都民疫, 死去甚衆, 淮民流江南者, 飢與暑并多疫死.
	嘉定 3년	1210	四月, 都民多疫死, 四年三月亦如之.
	嘉定 15년	1222	贛州疫.
嘉定 16년	1223	永道二州疫.	
恭宗 趙顯	德祐 1년	1275	六月庚子, 四城遷徙, 流民患疫而死者不可勝計, 天寧寺死者尤多.
	德祐 2년	1276	閏三月, 數月間城中疫氣薰蒸, 人之病死者, 不可以數計.

표 2. 宋代 疫病 發生 統計表

(2) 역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북송의 대책

위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북송과 남송의 기간은 별 차이가 없었지만, 북송시기에 역병 발생이 남송시기보다 많지 않아 建隆 원년부터 靖康 2년까지 167년 동안 14차례 밖에 발생하지 않아 평균 12년에 1번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송시기에는 평균 5년마다 1번씩 발생하였다.

남, 북송은 지리와 기후 등의 조건이 같고 오히려 북송의 영토가 남송보다 넓었는데 兩宋에 역병의 발생이 크게 차이가 났을까? 이는 정부의 예방치료 대책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먼저 통제된 조치에서 보면 북송시기에 역병이 14차례 발생하였고, 그 중에 12차례는 정부가 처방을 반포하고

관리를 파견하고 약을 조제하여 救療하였다. 황제와 정부관원 모두 전력을 다하였다. 宋·仁宗인 趙禎은 역병을 통제하기 위해서 侍從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진귀한 약물인 “通天犀”를 부수어 약을 조제하여, 民疫을 구하였다⁸⁰⁾. 일부 정부 관원들은 임시로 病坊을 세우는데 아낌없이 사재를 털었다.

蘇軾은 元祐 4년에서 5년까지 杭州에 큰 역병이 들었을 때 조정에 貢米를 감면할 것을 주청하고, 壇을 만들어 음식과 약을 나누어주고 의사를 각 病坊에 나누어 파견하여 치료한 것 이외에 私財 황금 50兩을

80)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94.

출연하여 病坊 건립에 찬조하여 많은 사람을 살렸다. 이 이외에 정부는 惠民國에 醫藥 책임을 맡겨 역병이 발생하였을 때 “成藥”을 배포하였다⁸¹⁾. 정부가 防治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조처도 힘을 얻었고, 따라서 역병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제어할 수 있어 더 크게 유행하고 사망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었다.

북송의 정부는 역병이 발생할 때에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여 통제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평상시에도 예방을 중시하였다. 『聖惠方』, 『慶歷善救方』, 『簡要濟衆方』 등을 반포하여 “命州縣長吏按方劑以救民疾.”⁸²⁾하였다. 정부는 매년 돈을 풀어 지방 장관에게 명하여 사람을 파견하여 약을 조제하여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질병을 예방 치료하게 하였다. 예방치료의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또 전국에 명하여 刊版 형식으로 『集驗方』, 『四時攝生論』 등의 방식을 백성들에게 공시하여 알기 편하도록 하였다.

徽宗은 역병을 예방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 五運六氣를 연구한 것을 토대로 1117년 10월 1일에 이듬해의 運歷을 공포하여 사람들에게 빨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술한 이러한 조치들은 역병 예방에 상당히 작용하였다.

북송의 황제와 정부는 역병의 예방과 치료를 중시하였기에 구체적인 시책이 다른 왕조에 비해 주도면밀하게 힘을 얻어, 역병의 발생빈도가 봉건사회에서 가장 낮았고 유행한 규모도 비교적 작았다. 이러한 상황은 객관적인 요인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북송시대에 의학의 발전을 중시하여 역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힘을 얻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3) 역병에 대한 남송정부의 대책

남송정부의 초기에는 역병의 예방과 치료를 비교적 중시하였다. “高宗南渡，民之從者如歸市。既爲之衣食以振其飢寒，又爲之醫藥以救其疾病。其有殞于戈甲，

死于道路者，則給度牒瘞埋之。”⁸³⁾하였다.

紹興 원년(1131년) 6월에 浙西에서 큰 역병이 돌아 관리들이 죽과 약으로 역병에 걸린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소흥 16년(1146년) 여름에는 수도에 역병이 돌아 “已未分遣醫官循行臨安療病者，于秋乃止.”⁸⁴⁾하였다. 紹興 26년(1156년) 여름에는 “行都又疫，高宗出柴胡制藥，活者甚衆.”⁸⁵⁾하였다.

寧宗은 역병이 발생했을 때 가난한 백성들과 역병으로 죽은 군인의 가족들에게 약과 장례비를 하사했다. 관에서 매장하고 200여 명이 승려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남송의 그 나머지 시기에는 防治 시책이 매우 적었고 북송정부의 일관된 시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남송정부는 역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그다지 힘을 쏟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남송시대에 역병이 발생하는 빈도가 북송의 2배나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역병의 발생은 정부의 防治 대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정부가 이를 중시하여 방치 대책에 힘을 실어 계속 일관되게 실행하면 역병은 적은 규모로 발생하거나 발생하여도 그 규모가 작아 통제하기 쉽고 반대로 발생하는 빈도가 잦고 규모가 크게 되면 악순환을 초래한다. 남송과 북송의 상황 역시 이러한 점을 말해주고 있다.

7) 미신적이고 비인도적인 풍속에 대한 의정 조치
역사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미신적인 풍속이 송대에도 여전히 존재하였고, 변방지역에는 더욱 심하였다. 송대 정부(특히 북송 정부)는 의학발전을 중시하여 미신적이고 비인도적인 풍속을 개혁하고 巫覡를 단속하였고, 또한 의학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의정 질서를 바로잡는 등 여러 방면에서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얻었다. 주요 조치와 효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이다.

83)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卷17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83*322.
84) 李心傳 撰. 建炎以來繫年要錄 卷155.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27*167.
85)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卷62.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81*269.

81)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94.
82)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卷12.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80*215.

(1) 환자의 遺棄를 금지시킴

송대 초기에 정부는 일부 변방지역에서 병자를 유기 하는 풍속을 금하는 영을 여러 차례 공포하고 처벌 방법을 규정하였다. 乾德 원년(963년) 7월에 武勝 絶度使 張永德이 上奏하길 “唐, 鄧之俗, 家有病者, 雖父母亦去不省視, 故病者輒死……請嚴刑禁之……”⁸⁶⁾ 하게 하였다.

태조는 그 뜻에 동의하여 “禁唐, 鄧家棄去病者之俗.”⁸⁷⁾한다고 조령을 내렸다. 또 죄로 다스리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보고 또한 조령을 내려 “民有疾而親屬遺去者罪之.”⁸⁸⁾하게 하였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四川지방에서 여전히 병자를 유기 하는 것이 발견되어 태조는 乾德 4년(966) 5월에 조령을 내려 “蜀都敢有不省父母疾者罪之.”⁸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령의 공포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효과적으로 금지시키고 억제하였으며 비인도적인 풍속을 바꾸어 백성들의 윤리도덕 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끼쳤다.

(2) 무당을 믿는 지역에 의약지식의 전파와 보급을 강화시킴

무당을 믿고 의학을 믿지 않는 변방지역들은 대부분 의약이 발달하지 못한 지역으로 백성들은 건강과 장수를 미신에 의존하였다. 때문에 송 정부는 우선 이런 지역에 의약지식을 전파 보급하고 方書, 本草를 배포하였다. 瓊州에는 의사가 없어 병이 나면 巫祝에 의존하였다. 開寶 8년(975) 11월 초에 “詔以方書, 本草給之.”⁹⁰⁾하였다.

慶歷 6년(1046)에 仁宗은 “閩俗左醫右巫, 疾家以巫

作祟, 而過醫之門, 十在二三, 故醫之傳益少.”⁹¹⁾하다고 하여 지방정부에 명하여 백성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何希彭의 『聖惠選方』을 널빤지에 써서 관청 문밖에 세워 놓고 보는 자들이 잘 알 수 있게 하였다. 高宗 小興 16년(1146) 6월 “辛酉, 右朝奉郎朱同知南雄州代還, 言嶺南無醫, 凡有疾病, 但求巫祝鬼, 束手待斃. 望取古今名方治瘴氣者, 集爲一書, 頒下本路. 從之.”⁹²⁾ 하게 하였다. 송 정부가 잇달아 취한 이런 조치는 이 지역의 의학 보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3) 巫覡을 개조하고 불법 활동을 처벌

송 정부는 의학지식을 전파 보급하는 것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巫術을 이용하여 재물을 사취하고 인명을 해치는 불법 활동을 징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개조하여 醫, 易業을 하게 하였다. 嶺南에는 병이 있어도 의사를 찾지 않고 사람을 죽여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괴이한 풍속이 있었다. 雍熙 2년(985)에 태종은 “深宜化導, 使之悛革.”⁹³⁾하라고 하였다.

天聖 원년(1022) 11월에 仁宗은 江南 동, 서 지역, 荊湖 남, 북 지역 등의 轉運司에게 명하여 “自今師巫以邪神爲名, 屏去病人衣食, 湯藥, 斷絕親識, 意涉陷害者, 并共謀之人, 并比類咒咀律條坐之.”⁹⁴⁾하게 하였다. 태종과 인종의 어명은 巫覡에 대한 송 정부의 기본입장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는데, 즉 사기와 인명을 해치는 巫覡에 대해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명을 해친 적이 없고 또 재물을 사취한 적이 없는 巫覡에 대해서는 개조, 교화시켜 그들을 醫, 易業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神宗 때에 虔州로 파견된 水利官員인 劉彝는 현지의 사람이 巫覡을 믿고 의약을 믿지 않는 상황에 의거하여 “著正俗方以訓, 斥淫巫三千七百家, 使以醫易業, 俗遂變……上加直史館, 至桂州.”⁹⁵⁾하였다. 徽宗

86) 李燾 撰. 續資治通鑑長編 卷4.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14*94.
87)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卷1.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80*97.
88)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卷1.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80*97.
89) 李心傳 撰. 建炎以來繫年要錄 卷159.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27*228.
90) 李燾 撰. 續資治通鑑長編 卷16.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14*239.

91) 蔡襄 撰. 端明集 卷29. 文淵閣四庫全書·集部·別集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1090*584.
92) 李心傳 撰. 建炎以來繫年要錄 卷159.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27*228.
93) 李燾 撰. 續資治通鑑長編 卷26.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14*382.
94) 李燾 撰. 續資治通鑑長編 卷101.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15*567.

때에도 무력을 금지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여 재물을 사취하고 인명을 해치는 것과 상관없이 무술활동은 모두 금지시켰다. 巫覡에 대한 송 정부의 일련의 정책과 조치들은 의학발전에도 의의가 있었다.

(4) ‘書禁’科 설치와 巫覡을 금지시킨 조치에 대한 논의

송대 의학교육에서 일반적으로 金鑠兼書禁科를 설치하였지만 그러나 정부는 巫覡을 금지, 제한, 개조하는 일련의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 문제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書禁’과를 설치한 것과 巫覡을 금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조치인데, 송대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것은 황제의 인식과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본다. 즉 ‘書禁’과의 설치에 대해 말하자면 송대 의학교육에서 徽宗 시대에 “大, 小方脈, 產, 眼, 口齒, 鍼, 產, 金鑠”(『宋會要輯稿』職官22)⁹⁶ 등 8개 과목을 설치하고 ‘서금’과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시기(의학교육을 설치한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모두 이 과목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禁巫覡”⁹⁷ 정책을 명확히 제시한 것은 徽宗이고 다른 황제들은 巫覡의 불법 활동을 제한, 개조, 징벌했을 뿐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무력을 금하는 휘종의 정책이 앞뒤가 일치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휘종이 의학을 믿고 의학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휘종은 의학을 깊이 연구하였고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 巫覡의 邪說을 막아낼 수 있었고, 정책적으로 이를 금지, 처벌하게 되었으며 더군다나 전과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황제들은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또한 제한하는 모순된 정책을 실행하였을까? 다른 황제들은

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질병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邪說의 영향을 철저히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呪禁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書禁과 巫覡을 자세히 나누어보면 일정한 구별이 있다. 『周禮』에 巫覡에 대해 분류하였는데, 司巫가 여러 巫의 정령을 주관하고 大祝이 六祝의 辭를 주관하였다. 이 이후에 祝과 巫는 점차 분리되어 祝의 명칭이 각 계급에 따라 일부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면 祝, 祝由, 祝由呪禁, 呪禁, 書禁 등이 있다.

『唐六典』의 해석에 의하여 呪禁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道禁이고 하나는 禁呪이다⁹⁸. 道禁은 산에 은거하는 方術士에서 나왔고(道敎), 禁呪는 석가에서 나왔다(佛敎). 呪禁에는 5가지 방법이 있다. 즉 存思, 禹步, 營月, 掌訣, 手印이다. 결론적으로 呪禁術은 종교의식을 진행할 때 많이 이용하였고 禁呪방법, 口訣에 규정이 있었다.

巫覡은 대부분 귀신이나 영혼을 불러오는 행위로 禁呪와는 상대적으로 고정된 방법과 주문은 없었다. 상술한 미세한 차이 때문에 송대 통치자들은 의학교육에 書禁科를 여전히 남겨두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통치자가 禁呪로 병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개별적으로 정신적인 요인과 관련된 질병에 심리치료를 통하여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셋째, 송대 때에는 귀신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이 적었다.

이러한 몇 가지 측면의 원인들이 송대 의학교육에 ‘書禁’科를 존치하는데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巫覡을 개선하고 타과한 정책은 사회질서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이었다. 타격을 주었으나 철저히 금지 못했던 것은 아마 재물을 편취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巫術에 대해 정부도 추궁을 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巫術과 呪禁의 서로 비슷하여 판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철저히 금지시킬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巫覡과 書禁의 구분, 과목을 설치하여 교육시키고, 또한 그것을 개

95)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卷334.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86*438.
96)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96.
97)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卷21.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80*306.

98)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96.

조하고 제한하는 정책을 실행한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자면, 양송시대에 의학발전과 관련된 정책이 많았다. 기구제도와 긴밀히 상관된 부분(예로 의학교육의 정책조치 등)은 다음에서 논의하는 것 이외에 시대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는 주요한 부분은 위의 7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문의 분석을 통하여宋代는 唐代의 의약정책을 계승한 것을 기초하여 사회발전의 새로운 배경 아래 의학을 발전시키고 또한 혁신적인 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의학서적을 교정, 반포하고, 정부가 제약공장을 세우고, 약국을 개설하고, “성약”을 발전시키고, 『내경』을 경전으로 삼은 것 등의 사업이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당시의 의학 발전에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의의가 있다.

3. 의약기구제도의 개혁

兩宋의 통치자들은 의학발전에도 이로운 일련의 정책을 제정하여 이 시기 의학발전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의학조직기구와 관리제도의 측면에서도 많은 개혁을 단행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의정 관리 체계를 형성하였다.

첫째, 의약정령을 주관하고 중앙, 지방, 군대, 학교 등의 의료를 책임지는 의약관리기관인 翰林醫官院을 개설하였다.

둘째, 校正醫書局을 창설하였다.

셋째, 제약공장, 약국을 개설하고 수입약품의 전매를 실행하였다.

넷째, 의학 교육 전문 기관인 太醫局을 개설하였다.

다섯째, 의약 자선 기구를 증가시켰다.

여섯째, 궁정의약기구가 수당시대의 옛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아래에 4가지 방면으로 나누어 서술하기로 한다.

1) 중앙의약관리기구의 개혁

(1) 翰林醫官院의 창설과 그 작용

의약 행정 관리 기구는 西晉에서 隋唐까지 기본적으로 太醫署가 맡았지만 왕조에 따라 그 기능과 권력이 완전히 달랐다. 兩晉, 南北朝代 태의서의 기능은 의정 관리와 궁정의료를 겸하였다. 그러나 隋, 唐代에 이르러서는 태의서의 기능은 의정 관리와 의학교육을 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宋代에는 의정기구의 개혁을 단행하여 의약행정 기관과 의학교육기관을 분리시켜 翰林醫官院을 설립하여 의약행정을 주관하였다. 또한 太醫局을 설립하여 의학 교육 기관으로 삼았다. 이때에 이르러 의약행정관리 및 의학교육이 조직에 있어서 모두 강화되었다.

翰林이라는 말은 최초로 唐代에서 나타나며 “唐太宗時, 名儒時時召以草制, 待詔, 常于北門侯進止, 號北門學士, 明皇改曰翰林待詔……開元二十六年, 乃爲翰林學士, 此蓋其始也.”⁹⁹⁾라 하였다. 한림의관 역시 당대 德宗시기에 최초로 나와 “貞元八年八月, 令待御醫, 尙藥, 直長, 藥藏郎, 并留授翰林醫官.”¹⁰⁰⁾하였다. 五代, 後唐代에 한림의관은 醫方을 교정하는 등의 업무를 주관하였다.

송대 淳化3년(992년)에 이르러 翰林醫官院을 설립하였다. 元豐 5년(1082년)에 翰林醫官局으로 명칭이 개칭하였고, 휘종 때에 또 翰林醫官院으로 명칭이 복귀되었다.

한림의관원은 일반적으로 한림원에 소속되어 관리되었고, 天文, 書藝, 圖書 등과 함께 翰林院 4국이 되었다. 한림원은 內侍省에 예속되었고 內庭에서 시중드는 것을 주관하였다. 書籍醫藥, 琴棋書畫 등의 시중이 포함되어 있다.

한림의관원은 황제와 內庭의 의약을 시중드는 것을 책임졌다. 의약위생의 政令과 군대, 학교, 지방에 의관을 파견하는 것을 주관하였다. 인접국으로 보내 이재민을 구제하고 방역하는 것 등도 醫官院에서 일

99) 宋·高承 撰. 事物紀原 卷4, 北京. 中華書局. 1985. p. 158.

100) 宋·高承 撰. 事物紀原 卷6, 北京. 中華書局. 1985. p. 212.

률적으로 의관을 파견하였다. 송대의 개혁을 통하여 중앙의약관리기구의 조직기능이 대대적으로 강화되었다.

한림의관원은 보통 院使와 副使 각 2명을 두어 공동으로 한림원의 일을 관리하였다. 그 아래에 “直院四人, 尙藥奉御六人, 醫官, 醫學祗候無定員……”¹⁰¹⁾이 있었다. 仁宗 寶元 원년(1038년)에 의관원 숫자를 102명으로 규정하였다. 嘉祐 2년(1057년) 10월에 “翰林醫官院自直院以下, 自今以142人爲額.”¹⁰²⁾하라고 조령을 내렸다. 의관원에서 의술이 뛰어나지 못한 의생을 자주 파면하였지만, 그러나 당시 정세의 영향으로 인하여 의관이 쓸데없이 넘쳐나는 것은 여전히 심했다. 휘종 政和 3년(1113년)에 이르러 한림의관의 총수는 이미 1096명에 달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감원시켜 소흥 2년(1132년)에 이르러서는 43명으로 축소되었다. 이로써 의관원의 인원이 각 단계에 따라 변화가 비교적 컸음을 알 수 있다.

송대 의관의 등급이 비교적 복잡하였다. 정화 이전 의관은 武階에 소속되었고, 정화 2년(기원 1112년)에 이르러서야 文職으로 바뀌고 “分爲十四階.”¹⁰³⁾하였다. 이후에 계속 등급이 늘어나 정화 3년(1113년)에는 22등급으로 늘어났다. 관리의 등급이 많았지만 그러나 최고 관리 등급인 保安大夫가 종 6품에 지나지 않았다.

한림의관은 일반적으로 40세 이상을 선발하였고 고시를 거쳐 합격한 의생으로 충원하였다. 응시하는 사람의 출신성분은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의관의 공석을 채우는 것은 보통 特補, 奏薦, 臣僚奏試, 局生 銷試 등 몇 가지 방법이 있고, 성적의 우열에 따라 醫職에 차별을 두었다. 예를 들어 8通하면 翰林醫學에 보하고, 6通하면 祗候에 보한다. 엄격한 선발을 거쳐 전국의 우수한 인재가 선발되어 한림의관원에 모였다. 王懷隱, 劉翰, 孫用和 등이 그 중에 있었던 의관

이었다. 한림의관이 황제와 황실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관직을 받고 녹봉이 인상되거나 벌금, 강직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림의관원은 송대에 처음 창설되었기 때문에 그 직책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다른 기구와 겹치는 것이 있었다. 일부 기구들은 여전히 서로 다른 기관에 예속되어 있었는데, 尙藥局은 殿中省에 예속되었고, 太醫局은 太常寺에 예속되어 있어 한림의관원에 귀속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한림의관원의 설립은 통일된 의약관리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송대 이전의 태의서는 최고 의약관리 기관이었지만 그 직무와 기능은 한림의관원의 관리기능보다 전반적이지 못했다. 송대의 개혁을 거쳐 의생의 선발, 임용, 파견, 轉任 등의 업무, 본초를 수정하고 의서를 교정, 편찬, 반포하는 등의 업무, 의사를 파견하여 약품을 나누어주고 역병을 防治하는 등의 업무, 궁정 및 지방의 의료업무 등 의약과 관련된 관리업무 등은 이 시기에 기본적으로 모두 한림의관원이 통일적으로 지휘하였다.

이로써 의관원의 성립으로 의약활동의 통일된 관리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는 한림의관원이 송대 각종 요인의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송대 정치체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인원의 불필요한 증원과 관리의 혼란 등 문제점들도 확실히 많았다. 그렇지만 의정의 통일된 관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2) 御藥院의 창설과 그 역할

송 이전에는 “唐尙藥局有內藥院, 宋朝太宗至道三年, 又置御藥院于禁中也.”¹⁰⁴⁾하였다. 御藥院이 內侍省에 예속되어 있었다. 崇寧 2년(1103년)에 殿中省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어약원은 궁내에 供奉官 3명이 주관하였고 간혹 士人을 채용할 때도 있었으며, 清代에는 內藥房과 같은 것이 있었다. “御藥院勾當官無常員, 以入內侍充掌, 按驗秘方, 以時劑和藥品以進御及供奉禁中之用.”¹⁰⁵⁾하였다. 天聖 4년(1026년)에 별도

101) 馬端臨 著. 文獻通考 卷55.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11*281.

102) 李燾 撰. 續資治通鑑長編 卷186.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17*124.

103)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98.

104) 宋·高承 撰. 事物紀原 卷6, 北京. 中華書局. 1985. p. 237.

로 上御藥供奉 4명을 두었고 그 품계는 內殿崇班과 같았고, 內侍省 宦官이 전담했으며 이후에 9명으로 늘었다. 이밖에 典御 8명, 藥童 11명, 匠 7명, 干辦官 4명, 典事 2명, 局史 2명, 書史 4명, 貼書 7명, 宇闕帖書 15명이 각기 직책을 주관하였다. 휘종 2년(1103년)에 “又增置內臣監官四員爲奉御, 以院官使二名有效者爲醫師, 副使爲醫正, 醫官爲醫佐. 雜役秤子, 搗碾子類爲藥工……”¹⁰⁶으로 삼았다. 이때부터 어약원의 인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기능도 강화되었다.

어약원의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에서 바친 약물을 보관, 가공, 포제하였고 필요한 약재를 구매하였다. 元豐 원년(1078년)에 御藥院에서 神宗에게 “藥材有市販所無, 乞下諸路轉運司具出產州軍, 如闕, 本院以所須名色科置上供.”¹⁰⁷할 것을 청하여 신종의 동의를 얻었다.

둘째, 왕의 명에 따라 약물을 나누어주었다. 대신이 병들면 황제가 어약원의 의관을 파견하여 약을 하사하였다. 疫癘가 유행할 때에는 어약원도 한림의관원과 같이 의관을 파견하고 재해지역에 약품을 보냈다.

셋째, 때로는 禮文을 관장하여 “兼受行典禮及貢舉事.”¹⁰⁸하였다. 이는 주로 어약원 관원들이 황제를 가까이 모시고 수시로 시중을 들었기 때문이다.

넷째, 尙藥局과 함께 御藥을 奉供하는 것을 책임졌다.

어약원의 설치는 전국적인 약물 관리 작업을 강화시켰다. 이는 한림의관원과 마찬가지로 송대 의약관리기구의 개혁으로 얻어진 성과이다. 이러한 전국적인 의약 관리 기구를 수립하고 강화한 경험은 金, 元, 明, 淸 왕조에 영향을 끼쳤다.

2) 의학교육 기구와 제도의 개혁

의학교육도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계속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다. 魏晉시대에 발달된 이래로 남북조시대의 발전을 거쳐서 隋, 唐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완비된 의학 교육 제도를 수립하였다. 송대는 당대의 의학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일부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주요 개혁은 아래와 같은 방면이 있다.

(1) 교육기구의 독립과 분과가 점차 합리화됨

隋, 唐의 의학교육은 태의서 안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당시 태의서는 의정 관리의 기능도 갖추고 있었다. 송대에는 의정 관리와 의학교육을 분리시켜 의정 관리는 한림의관원을 설립하고 의학교육은 태의국을 설치하였다. 이때부터 두 방면의 기능이 모두 강화되었다.

송대에 태의국의 설치와 의학교육 업무를 주관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실현되었다. 송대 초기에 태의서를 설치하고 雍熙 4년(987년)에 조령을 내려 각 지역의 명의를 선발하여 태의서에 두었다. 淳化 3년(992년)에 태의서가 太醫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 해 5월에 “以民多疾疫, 令太醫局選良醫十人, 給錢五十千爲市藥之宜……”(『宋會要輯稿』職官22)¹⁰⁹하라고 조령을 내렸다. 따라서 이시기에 이미 태의국이 태의서를 대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직 의학교육은 시작하지 않았다.

송 정부가 의학교육을 시작한 것은 慶曆 4년(1044년)이었다. 그 해 仁宗이 範仲淹의 건의를 받아들여 太常寺에 太醫局을 설립하였다¹¹⁰. 한림의관원에서는 孫用和, 趙從古 등이 교수를 맡아 武成王廟에서 『素問』, 『難經』 등을 가르쳤고 경성의 의학생들이 와서 강의를 들었다. 國子監의 반대로 태의국은 다시 鼓吹局으로 옮겨 강의하였다. 후에 간절히 요청하여 다시 무성왕묘로 옮겼다. 皇祐 원년(1049년)에 務州의 華亭主簿인 陳應之가 태의국을 관장하였다.

처음 태의국은 학생들의 숫자를 제한하였다. 嘉祐

105)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卷164.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83*52.

106)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99.

107) 李燾 撰. 續資治通鑑長編 卷288.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19*20.

108) 程大昌 撰. 考古編 卷7. 北京. 中華書局. 1985. p. 50.

109)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99.

110)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 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321.

5년(1060년)에 정원을 120명으로 정하고 모두 9개 과로 나누고 각과마다 인원수가 달랐다¹¹¹⁾. 大方脈(내과) 40명, 風科 30명, 小方脈(소아과) 30명, 産科 4명, 眼科 6명, 瘡腫科 4명, 口齒咽喉科 4명, 金鏃兼書禁科 1명, 金鏃兼折傷科 1명이었다. 이때에 학생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다. 규정에는 학생의 연령은 반드시 15세 이상이 되어야 했다. 먼저 太常寺에 신청하여 가정의 상황을 적어 냈고(내용에는 성명, 출신 가문, 이력 등이 있다), 또한 命官, 使臣 혹은 翰林醫官, 醫學 1명을 보증하고 학생 3명을 연대 보증하였다. 太醫局에서 1년 동안 공부한 뒤에 입학고시에 참가하고, 합격자는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 정식으로 태의국 학생이 되었다. 이와 같이 계획성 있게 의학생을 양성하고 동시에 의학생의 자질을 높였다.

神宗 熙寧 9년(1076년) 5월에 태의국이 다시는 太常寺에 예속되지 않는다고 詔를 내리고 “置提舉一, 判局二, 判局選知醫事者爲之. 科置教授一, 選翰林醫官以下與上等學生及在外良醫爲之.”¹¹²⁾ 할 것을 명하였다. 의학 분과는 일찍이 13과로 나누었다¹¹³⁾.

元豐 때에 제도를 바꾼 후에 태의국은 太常禮部에 예속되었고, 의학은 또한 大方脈, 風科, 小方脈, 眼科, 瘡腫兼折傷, 産科, 口齒咽喉 鍼灸, 金鏃兼書禁 등 9과로 나누었다(『元豐備對』)¹¹⁴⁾. 이는 嘉祐 시기에 9과를 기초하여 중복되는 金鏃兼折傷科를 없애고 침구과를 증설하여 완성한 것이다. 이러한 조정을 거친 후에 분과는 보다 합리적으로 되었고 元豐시기에 태의국 학생의 정원도 嘉祐시기의 120명에서 300명으로 증가되었다.

태의국이 慶歷4년부터 의학교육을 주관하였고 이후에 북송 元祐시기와 남송 乾道7년에 두 차례 황제가 조령을 내려 폐지시켜 40여 연간 업무가 정지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간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의학 분과는 元豐시기에 제도를 바꾸어 9과로 나눈 뒤에 송대 말기까지 계속 답습되었다.

(2) ‘醫學’을 창설하고 三舍法을 실행

송 휘종시기에 의학과 의생의 지위를 제고시키기 위해 태의국을 설치하여 의학교육을 계속 실시한 것 이외에 國子監에 별도로 ‘醫學’을 설치하였다. 휘종 崇寧 2년(1103) 9월15일에 講議使가 아뢰길 “昨奉聖旨, 令議醫學, 臣等竊考熙寧, 迢邐三代, 遂詔興建太醫局教養生員, 分治三學諸軍疾病, 爲惠甚博, 然未及推行天下. 繼述其事正在今日, 所有醫工, 未有獎進之法, 蓋其流品不高, 士人所耻, 故無高識清流習尙其事, 今欲別置‘醫學’, 教養上醫. 竊考熙寧元豐置局以隸太常寺, 今既別興‘醫學’教養上醫難以更立太常寺, 欲比三學(太學, 武學, 律學), 隸于國子監……”(『宋會要輯稿』崇儒三)¹¹⁵⁾이라 하였다. 휘종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국자감 三學제도에 따라 의학을 설치하고 분과에 박사 두어 지도하고, 마침내 學長, 學諭를 설치하였다. ‘三科通十三事’를 설치하고 “三舍法”을 실행하였다. 학생 수는 上舍生 40명, 內舍生 60명, 外舍生 200명이다. 국자감에 “醫學”을 신설하여 의학의 지위를 제고시켰고 세인의 지지를 얻었다. “臣僚言伏觀朝廷興建‘醫學’, 教養士類, 使習儒術者通黃素, 明診療, 而施于疾病, 謂之‘儒醫’, 甚大惠也.”(『宋會要輯稿』崇儒三)¹¹⁶⁾하였다.

국자감의 의학생들은 교육을 받은 유생들로 문화 수준이 비교적 높고 학식이 높은 청빈한 인재에 속했다. 이 때문에 세인의 눈에는 그들을 다른 三學 학생들과 동등한 지위로 보았다.

崇寧 2년부터 ‘의학’을 설치한 후에 승녕 5년에 폐지되었다가 大觀 원년에 다시 설치되었다. 대관4년에 태의국에 병합되었다가 政和 3년에 다시 복원되었다. 宣和 2년에 다시 폐지되었다.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111)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 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321.

112) 曹仁虎 等奉勅撰. 欽定續文獻通考 卷 56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27*570.

113) 즉 大方脈, 風科, 小方脈, 鍼灸, 口齒, 咽喉, 眼, 耳, 瘡腫, 傷折, 金鏃, 書禁이다.

114)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 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321.

115)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100.

116)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100.

시행되지 못했지만 송대에 창설되어 10여 년간 지속되어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上等의 의사를 양성하고 세인들의 관념 속의 의학과 의생에 대한 지위를 바꾸는데 적극적으로 작용하였다.

(3) 고시제도가 더욱 완비됨

고시제도는 교육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제도이다. 송대는 의학교육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일련의 고시제도도 수립하였다. 송대의 의학교시제도의 발전은 대략 네 단계가 있다.

제1단계는 고시제도의 형성이다. 태의국의 건립된 초기에는 비교적 엄격한 고시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양성한 의생의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여 仁宗은 至和 2년(1055년) 9월에 “詔提舉醫官院：至今試醫官，并問所出病源，令引醫經本草，藥之州土，主療及性味畏惡，修制次第，君臣佐使，輕重奇偶條對之，每試十道以六通爲合格。”¹¹⁷⁾하게 하였다. 嘉祐 5년(1060년)에 太常寺는 또한 상술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였다. “今詳從神農本草于醫藥中爲最切用，自來多不習懂，欲乞自今後每遇考試，于問義十道中兼問『本草』大義三，兩道，如雖通他經，于『本草』全不通者，亦不預收補。”(『宋會要輯稿』職官²²⁾118)라 하였다. 이에 이르러 의학교시의 내용에 따른 비례와 요구사항 등의 규범이 대체로 생기게 되었다. 초보적으로 형성된 이러한 규범에서 보면 고시의 중점이 임상약물의 활용에 비교적 편중되었다.

제2단계는 임상심사제도의 수립이다. 神宗시기에 의학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임상심사 제도를 제정하였다. 즉 의학생은 반드시 三學 학생과 균영의 장교나 병사들의 병을 돌아가며 치료하고 연말에 치료기록에 반영된 효과에 근거하여 상, 중, 하 3등급으로 나누고, 이것으로 봉급의 표준을 확정하였다. 치료에 실수가 많으면 처벌하였고 과실이 심하면 태의국에서 퇴출시켰다. 이 시기 임상심사규정은 송대의

학생고시의 방법과 내용에 충실하였다.

제3단계는 학교의 고시제도가 완비되었다. 崇寧 2년에 “醫學”이 창설된 이래 의학생 고시제도도 진일보 발전하였다. 이 시기 의학교시는 補試, 公試, 私試 등 3가지가 있었다. 補試는 “의학”의 신입생을 위한 고시이다. 그 내용은 諸經의 大義 三道(運氣大義가 포함되어 있다), 假令病法(즉 病案 분석) 一道이다. 수험생의 조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시험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私試와 公試는 입학한 뒤에 재학기간에 치르는 시험이다.

私試는 학교의 長官이 책임지고 매 계절마다 한차례씩 3場을 시험한다¹¹⁹⁾. 第一場은 三經大義 五道이다¹²⁰⁾. 第二場은 方脈科에서는 脈證大義 三道와 運氣大義 二道를 치르고, 鍼, 瘍科에서는 小經大義 三道를 치르고¹²¹⁾, 運氣大義 二道를 친다. 第三場은 假令病法 三道이다.

公試는 황제가 칙령을 내려 관리를 과견하여 시험을 주관하고 二場으로 나누어 치른다¹²²⁾. 第一場은 三經大義 三道이고, 方脈科에서는 별도로 脈證大義 二道를 보고, 鍼, 瘍科에서는 따로 小經大義 三道를 보았다. 第二場에서는 假令病法 二道와 運氣大義 一道를 보았다.

公, 私試의 성적은 상, 중, 하 3등급으로 나누고 솜로 올라가거나 낙제시키는 근거로 삼았다. 上舍, 內舍生은 五學¹²³⁾을 돌면서 학생들을 진료한 상황을 심사하였는데, 제2단계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제4단계는 의생 임용고시제도의 형성이다. 송대에 의학생 채용과 재학기간의 고시 등 일부제도 이외에 의생임용고시 제도를 제정하였다. 淳熙 15년(1188년)에 內외의 의생들이 먼저 禮部의 심사를 거쳐 합격한 뒤 脈義 三道를 치고 二通한 자는 다음 해에 省試에

117) 李燾 撰. 續資治通鑑長編 卷181.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17*56.
118)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101.

119)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 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321.
120) 三經은 方脈科에서는 素問, 難經, 傷寒論, 鍼, 瘍科에서는 素問, 難經, 黃帝三部鍼灸經이다.
121) 小經은 巢氏病源, 龍木論, 天金翼方이다.
122)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 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321.
123) 太學, 武學, 律學, 算學, 藝學이다.

참가할 것을 명하였다¹²⁴⁾. 經義 三場 十一道를 처서 五通하면 합격하였다. 八通하면 한림의학에 들어가고 六通하면 祇候에 補任되었다. 이에 이르러 송대의 학교교육과 의생임용 등 고시에 일정한 규범이 확정되었다.

이상 몇 가지 제도 이외에 “彌封”법 등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속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송대에는 의학교시방면에 건전한 제도를 적지 않게 수립하였고 또한 의학교육의 발전을 추진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4) 지방의학교육을 발전시킨

송대 지방의학교육은 기본적으로 太醫局의 제도를 따랐고, 神宗 때에는 기존 道, 州, 府의 의학을 기초하여 縣까지 확대시켰다. 또한 고시를 거쳐 성적이 우수한 자는 縣級 醫官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충하도록 규정하였다. 신종 6년에 禮部에 명하여 입법하고 각급 지방의학생 수를 “京府節鎮十人, 內小方脈三人, 餘州七人, 小方脈二人, 縣每一萬戶一人, 至五人止, 三人以上小方脈一人, 遇闕, 許不犯罪經決之人投獄, 召保, 差官于所習書試十道及五通給貼補之. 犯公罪杖以下聽贖. 大方脈習『難經』, 『素問』, 張仲景『傷寒論』兼『巢氏病源』二十四卷; 小方脈習『難經』兼『巢氏病源』六卷, 『太平聖惠方』十二卷. 遇醫學博士, 助教闕, 選醫生術優效著者充.”¹²⁵⁾하였다. 남송 乾道시기 지방의학 설치를 다시 확장할 때에도 상술한 제도 대부분을 계승하였다.

송대 지방의학교육에서 휘종 때에는 다른 시기와는 달리 國子監에 설치한 “醫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기 지방의학교육도 중앙의 “의학”제도를 모방하여 채택하였으며, 그러나 고시의 분량은 적었다¹²⁶⁾. 이 시기에 지방에 설치한 “의학”은 지방의 提舉學事司에 귀속되었고 학생은 의술을 배우는 것이

외에 또한 儒經大業을 배웠다. 그밖에 이 시기에 또한 “比仿諸州學格文士三年所貢人數十分中以一分五厘人數, 創立諸路醫學貢額.”¹²⁷⁾하였다. 이는 지방의 학생을 장려하는 방법이었다.

3) 궁정의료기구의 감소

봉건사회의 의약업무 가운데 황제와 황실사람들의 의료보전은 중요한 부분이었다. 따라서 황궁의 의약보전을 둘러싸고 상응하는 많은 의약기구들이 만들어졌다. 송 이전 다른 왕조들은 보통 궁정 안에 3개의 전문기구를 두었다. 하나는 전문적으로 황제의 의학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태자의 의학을 위한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황후, 妃嬪의 의학을 위한 것이었다. 기구의 명칭이 각 왕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시중드는 성격은 같았다.

송대 황제들은 의학의 발전을 중시하였고, 궁정에 의료 기구를 설치한 것이 다른 왕조보다 비교적 간소화하였다. 태자와 后妃를 위한 전문적인 의약기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궁정의관의 숫자가 줄었다. 황제를 위한 “尙藥局”의 인원은 唐代와 비슷하였다. 典御, 奉御, 監門, 醫師, 御醫, 醫正, 醫助, 藥童, 封人, 藥工, 掌庫, 典庫, 局長, 典事, 局史, 直史, 書史, 帖書 등 18개의 의관 명칭을 두어 어약을 조제하고 진료하는 일을 공동으로 완수하였다¹²⁸⁾. 물론 翰林醫官院과 御藥院도 황제의 의학을 위한 기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 두 기구는 전국의 의약관리업무를 겸하고 있어 전문적으로 황제를 위해 복무하는 성격과는 달랐다.

이 이외에 한림의관원 관리의 숫자가 많았지만 이는 전체적인 제도의 산물이므로 황실의 의약기구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황실보건기구로 말하자면 송대에는 규모를 줄이고 간소화한 선례를 보였다.

4) 慈善 기구의 증가

송대에 궁정의약기구는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의약과 관련된 자선 기구는 늘어났다. 이는 의학이 민

124)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101.

125) 李燾撰. 續資治通鑑長編 卷355.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19*637.

126)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101.

127) 章如愚. 群書考索 卷355.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937*406.

128)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 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319.

중화로 향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 아래에서 이러한 기구의 설치와 역할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1) 평민의료 기구의 증가

평민의료 기구의 발전은 고대사회에서는 매우 느렸다. 남북조시기에 北魏가 설치한 醫館은 당시 최초의 평민병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전에도 구제의 성격을 띤 의료자선 기구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南齊에 “六疾館” 등이 있었으나 이러한 기구는 북위 시대 醫館이 갖추고 있는 병원의 성격보다 못했으며, 이후 唐代에 “悲田養病坊”을 설치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을 위해 병을 치료해 주었다¹²⁹⁾.

송대에 이르러서 정부가 설립한 병원과 유사한 성격을 띤 기구들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眞宗 大中祥符 2년(1009년) 7월에 “初置養病院”¹³⁰⁾하였다. 仁宗 景祐 4년(1037년)에 蘇舜卿이 “依有唐故事, 置悲田養病坊. 州郡并以曹官領之, 仍于高年擇信可稱者三·兩人與僧官同切管勾…….”¹³¹⁾할 것을 주청하였다. 元祐 5년(1090년) 문학가 蘇軾이 항주에서 역병을 통제할 때에 “病坊”을 창설하고 “安樂”이라고 명명하였다. 崇寧 2년(1103년)에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명칭을 “安濟坊”으로 바꾸었다¹³²⁾. 이후에 “안제방” 등의 평민병원이 전국적으로 많이 세워졌다.

(2) 궁인병원 건립

고대에는 궁정에 궁녀의 숫자가 매우 많았다. 궁정의 의약 기구들은 모두 황제와 황실사람들을 위해 설치된 것이고 궁내 差役과 僕人의 의료는 일반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당대에는 太醫署에 “患坊”을 설치하고 궁녀를 위한 병을 치료하였다.

송대에도 궁녀의 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병원인 保壽粹館을 설치하였다. 송대 초기에는 궁녀

의 병은 대부분 妙法廣福寺에서 치료하였다. 사찰에서 병이 낫는 사람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신종 때에는 太醫가 책임지고 치료하여 비교적 효과가 좋았다. 徽宗 政和 4년(1114년) “七月丁丑置保壽粹館, 以養宮人有疾者.”¹³³⁾하였다. 館內에는 일반적으로 명의가 진료하였기 때문에 궁인의 의료가 보장받게 되었다.

(3) 자선기구의 역할

송대에 평민과 궁녀의 의약을 위한 기구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홀아비, 과부, 고아, 독신자를 돌보는 자선보건 기구를 설치하였다. “嘉祐以前……京師有東西福田院, 以收養老幼廢疾, 至嘉祐 八年(1063년), 又增置南北福田, 共爲四院.”¹³⁴⁾하였다. 嘉祐 이전에는 福田院의 규모가 작아서 20여 명밖에 수용할 수 없었다. 嘉祐 때에는 “增置南北福田院并東西各廣官舍, 日廩三百人…….”¹³⁵⁾이 되었다. 돌보고 구제가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종 때에는 복전원에 영을 내려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안배하여 수용하였다.

哲宗 元祐 3년(1088년)에는 範祖禹가 福田院에 가난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숫자에 한계가 있어 외롭고 가난한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임금께 아뢰고 “宜于四福田院增蓋官屋, 以處貧民, 不限人數, 并以舊法收養.”¹³⁶⁾할 것을 주청하였다. 이때부터 복전원 시설을 확장하여 수용 인원수를 늘려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4) 기타 유관 기구의 설치

송대에는 상술한 보건기구를 설치한 것 이외에도 당대에 遺骸를 매장하는 전통을 계승하여 여러 차례 전국에 조령을 내려 유골을 매장하였다. 이러한 작업

129)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102.

130) 李燾 撰. 續資治通鑑長編 卷73.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15*160.

131) 蘇舜卿. 蘇學士集 卷11.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1092*80.

132)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 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320.

133)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卷21.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80*303.

134) 李燾 撰. 續資治通鑑長編 卷408.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21*210.

135)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卷17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83*321.

136) 李燾 撰. 續資治通鑑長編 卷408.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21*211.

이 계속해서 전개됨에 따라서 元豐 연간(1075~1085년)에 유헤를 함께 매장하는 義塚이 생겨났고 “漏澤園”이라 명명하였다¹³⁷⁾. 휘종 崇寧 3년(1104년)에 “又置漏澤院.”(『宋史·食貨上六志第131』)¹³⁸⁾하였다.

이러한 시책은 의학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그러나 환경위생을 개선하고 역병을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밖에 송대는 五代에 만들어진 “病囚院”¹³⁹⁾ 제도를 답습하였고, 또 새로운 조건 아래에 새로운 관리 제도를 많이 제정하였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송대의 황제와 정부는 의학의 발전을 비교적 중시함에 따라 일련의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여 제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의약기구제도 방면에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중앙의약관리기구 방면에는 翰林醫官院과 御藥院을 새롭게 설치하였다. 의학 교육 기구는 太醫署를 답습하지 않고 전문 관리부본인 太醫局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國子監에 “醫學”을 창설하고 “三舍法”을 실행하고 일련의 고시제도를 수립하였다. “市易務”의 영향으로 정부가 제약공장과 약국을 세웠고, “成藥”이 이때에 크게 발전하였다. 제지인쇄술의 발달로 의서의 교정, 편찬, 반포에 면모를 크게 바꾸어 놓았고, 校正醫書局的 탄생과 문헌의 정리, 전파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궁정 의약 기구는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의약과 관련된 자선 기구는 늘어났다. 의료 기구의 배치를 조정하고 의료 업무가 궁정에서 민간으로 이행하는 조짐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 의약 기구 제도의 영역에서 혁신적인 국면이 나타났으며 의학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영향을 끼쳤다.

4. 의약정책의 개선이 의학발전에 미친 영향

1) 의약문헌정책은 의학지식의 전파와 보급을 촉

진

송대 정부는 의약문헌의 수집, 교정, 편찬, 반포 등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하였다. 秦漢 시기에 의서를 보존, 수집, 교정했던 것을 기초로 또한 광범하게 수집하고, 세심하게 교정하고, 재편집 혹은 새롭게 편집하고, 판각하거나 小字로 다시 새기고, 정부가 반포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구매하고, 돌에 새기거나 판목에 새겨 널리 알리는 등 일련의 조치는 의약지식을 이 시기에 전례가 없이 전파, 보급시켰다.

송대 이전의 수많은 醫籍들은 송대에 이르러 체계적인 가공, 정리를 거쳐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의약 지식은 인류가 오랫동안 질병과 싸운 경험이 총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식이 구두로 전수되어 전해 내려온 것 이외에 보다 주된 것은 문헌을 통하여 전파되었다.

의약 문헌은 의약 지식의 주요한 매개체였다. 그것의 존재는 의학의 흥망성쇠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고, 이런 의미에서 송대에 대량의 의서를 정리하여 교정, 반포한 것은 객관적으로 의학발전을 추동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교정, 편찬, 반포된 의서는 本草方書와 의학이론 저작들이었다. 따라서 송대의 의학문헌작업의 정책은 본초 약물학과 기초 이론 지식의 전파와 보급을 두드러지게 촉진시켰다.

2) 약물학의 발전

송대의 황제들은 의학발전을 중시하였는데, 太宗이 직접 名方을 수집하고, 徽宗이 직접 『聖濟經』과 『聖濟總錄』 등을 편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개괄하면 方藥과 의학이론을 중시하였다는 것이다. 교정, 편찬, 반포한 의서가 불완전한 통계이지만 28部 1687卷이다. 그 가운데 本草方書類가 16종 1525권으로 총部數의 57%를 차지하고 전체 권수의 90%를 차지한다¹⁴⁰⁾. 따라서 이 시기에 교정, 편찬, 반포된 의서는 本草方書類의 저작이 위주이다. 정부가 본초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수정하여 전국 각 州郡에서 생산되

137)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 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320.

138)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103.

139)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 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320.

140)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104.

는 약물을 수집하고 관련된 항목에 산지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域外 약물을 대량으로 증보하였다.

정부가 수정한 본초저작은 6부이고, 지방 정부가 수정한 것이 1부로 이는 역사상 본초저작을 가장 많이 수정한 시기였다. 송대에 본초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수정하여 본초약물에 대해 전례가 없이 총결하였고, 또한 본초 약물학 문헌에 대한 정리도 이전에 없었다. 이는 본초 약물학의 발전에 커다란 촉진작용을 일으켰다.

송대 약물학 발전의 다른 한 측면은 “성약”의 이론과 기술이 제고된 것이다. 본초 약물을 총결하고, “市易法”을 실시한 형세에 맞춰 설립한 제약공장, 약국과 수많은 환자의 수요 등이 모두 “성약” 발전을 위한 좋은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성약”의 생산은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 매년 정부는 이윤 40여 萬緡을 거두었다. “성약”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官藥局의 의관들이 민간의 單方, 驗方을 널리 수집하고, 기존의 방제를 연구하여 개조하고 또한 약물판매 경험을 총결하고 부단하게 정리, 편찬하여 『和劑局方』을 완성하였다. 반복적이고 끊임없는 생산을 통하여 “성약”의 配方이론, 생산기술 등은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 시기에 생산한 “至寶丹”, “紫雪丹” 등 효험 있는 “성약”들은 천여 년 동안 환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송대에 “성약”의 발전 역시 이전에 없던 것이다.

3) 『內經』, 『傷寒』 등 기초학과의 발전

의학 이론의 발전은 그 자체의 규율 이외에 외부의 환경 조건도 있다. 이에 대한 외부요인의 영향도 의학에 대한 영향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송대 정책 요인이 『內經』, 『傷寒』, 鍼灸 등에 미친 영향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방면이다.

첫째, 황제가 의약방면의 행위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개국 황제인 송太祖는 그의 동생인太宗을 땀으로 치료하였고, 徽宗은 『內經』, 五運六氣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또한 『聖濟經』 등을 저술하여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의생을 이끄는 시범적인 작용을 하였다.

둘째, 의학 교육에서 교육 과정의 설치와 폐지는 학과 발전의 직접적인 외부 동력이다. 송대 의학교육에서 『內經』 등 기초 과목은 줄곧 주요 교과 과정이었다. 휘종 시대에는 『內經』을 太學, 辟雍 학생이 필독하는 경전 중에 하나로 삼았고, 의학 교육에 『傷寒論』과 운기 이론을 새롭게 증설하였다. 정부가 이러한 과정을 개설하여 敎學한 것은 이러한 학과의 발전에 커다란 촉진 작용이 있었다.

셋째, 정부가 이러한 학과의 의서를 중점적으로 교정, 편찬, 반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이러한 학과의 발전을 추동하였다. 송대에 교정, 반포된 의서 가운데 본초 방서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 이외에 의학이론 방면의 의서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송대에 교정, 반포한 의서가 28종이고, 의학이론 방면의 저작은 9종으로 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서는 한 차례만 교정, 반포된 것에 그치지 않았고 『素問』만 해도 잇달아 4차례나 교정하였다. 정부의 의학이론 저서에 대한 교정, 반포는 의학이론 자체의 발전에 간접적으로 촉진시켰음이 틀림없다. 송대에 의학 이론을 중시하고, 의학 이론 자체의 발전은 금원시대 학술논쟁의 기초가 되었다.

5. 송대 의정의 평가와 형성 원인

1) 송대 의정의 평가

송대 대다수 통치자들은 의약을 애호하여 의학의 발전을 중시하였는데, 이는 다른 왕조의 통치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궁정 의료 기구의 설치가 줄었고, 상대적으로 평민의료와 의약과 관련된 자선 기구가 늘어나 백성들의 의료 조건이 점차 개선되었고 이러한 정책방향은 진보적이다.

醫籍을 광범하게 수집, 교정, 편찬, 반포하여 의학 문헌을 보존, 정리하고 또한 의학 지식을 전파하고 보급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는 송대 의정 중에서 가장 성공한 정책이었다.

정부가 약물을 널리 조사하여 본초를 수정하고, 제약공장, 약국을 설치하여 약물을 전매하고, 劑型을 개혁하여 “成藥”을 발전시켜 용약의 규범을 통일시키고 약국에 진료소를 설치한 등의 조치는 약물에 대

한 발전과 의학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후기에는 관리에 약간 혼란이 있었지만 이는 부차적인 것이다.

의학 교육에서 태외국과 국가감에 설치한 “醫學”의 교육 제도는 그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기구의 예속, 전 문 과목의 분과, 고시제도, 학교 관리 등의 방면 모두 새로운 경험을 쌓았다. 醫學에서 “三舍法”, “貢額”의 방식 등은 의학 교육을 장려하는 조치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송대 의학 교육에도 분명 과실이 있었다.

첫째, 제도의 준폐로 교육의 연속성을 파괴하여 우수한 의학 교육 경험의 축적과 계승을 저해함으로써, 잠재력이 결핍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둘째, 약학 교육을 전문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전문 교육이 없고 전문 인재가 부족하여 唐宋 시기 약물을 널리 조사한 官修本草, 정부가 제약 공장 약국을 경영, 약물 제형의 개혁 등 일련의 조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여건을 상실시켰다.

의정기구의 설치는 대부분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점은 예속관계가 혼란스러웠다는 것이다. 상부 소속기관의 견제를 많이 받아 통일된 지도와 협조가 부족했다. 최고 의정 기구인 한림의관원도 다른 의약기구를 통제할 권한이 없었고 직책이 중복되고 인원도 과잉되었다. 醫官院 자체에도 잉여 인원이 많았고 엄격한 관리제도가 부족했다. 따라서 송대에 의관 관리 방면에 있어서 전반적인 효율이 떨어졌다.

2) 兩宋시기 의정이 형성된 원인

(1) 정치 제도적인 요인

송대 의정 제도는 정부 제도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 예를 들어 한림의관원의 의관이 과잉하였고, 의관은 구체적인 사무와는 관계없이 武官의 품계에 따라 지위가 올라가고 녹봉을 받았다. 한림의관이 가장 많았을 때는 1096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는 국정 제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송대 정치 제도의 전체적인 특징은 對內에 주안점을 두어 집권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 방법과 조치는 권리를 분산시키고 官과 職을 분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보편적인 官制가 문란해지고 쓸데없는 관리가 증가하게 되었다. 한림의관원 역시 이러한 정치제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조직이 방대해지고 인원이 과다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송대에 屋上屋과 같은 제도를 제정하게 된 그 주요 원인은 唐末五代에 藩鎮이 할거한 교훈과 趙匡胤이 병권을 장악하여 하루아침에 後周 정권을 쉽게 탈취한 경험을 총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두 가지 근본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송대 통치자들은 대신과 장군 등 관원의 직권을 삭탈하는데 대부분의 정력을 기울여, 그들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중앙집권을 대폭 강화시켰다. 이러한 국정제도의 영향으로 송대 전반적인 관계에 문란을 초래하였다.

송대 정치 개혁은 의정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王安石이 變法을 실행할 때 교육의 “三舍法”을 만들었다. 이 제도는 의정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감에도 “醫學”이 설치되었고 또한 “삼사법”을 실행하였다.

(2) 경제 기술적인 요인

송대의 3대 발명은 의학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畢昇이 활자를 발명하여 인쇄술이 발달한 것이 의학문헌을 刊刻하여 반포하는 좋은 조건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송대에 비로소 校正醫書局이 성립되어 대량의 의서가 비로소 간행되어 유전될 수 있었다.

화약을 발명하고 이를 널리 활용하여 금속공업과 채광업의 기술수준을 높였다. 鍼灸銅人과 질 좋은 침이 나올 수 있었고, 이는 鍼灸 穴位를 규범화하고 통일시켜 침술 치료기술을 향상하고 교육 수준을 높이는 등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나침반의 발명으로 해상 무역의 발달을 가져왔다. 한편으로는 외국과 의학이 광범하게 교류되어 의, 약학의 진보가 촉진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과의 무역이 활기를 띠면서 국가의 세입이 증가하여 경제

수준이 높아졌으며 또한 의학 등 여러 사업의 발전에 기초가 되었다.

그 이외에 경제개혁정책 역시 의정사업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王安石의 變法에서 “市易法”을 제정함으로써 약재의 국가전매정책이 생겼고, 약물의 매매는 약물시장의 수요에 조율을 받았기 때문에 복용이 편리하고 값도 싸고 질이 좋은 “成藥”이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성약”의 발전은 정부가 경영하는 제약 공장과 약국 및 약국 진료 등의 기구의 탄생을 촉진시켰다.

(3) 통치자 사상의 영향

의학 정책은 의학 발전에 외부적인 영향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왕조사회에서 정책의 제정은 통치자의 사상과 유관하다. 송대 통치자의 의정 사상은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① 先王을 본받음

송대 황제들의 의정에서 중요한 원천은 선왕을 본받는 것이다. 송대 초기 開寶 4년(971)에 명의를 초빙하였는데, 태조 자신이 그 이유를 “『周禮』有疾醫掌萬民之病, 于漢置本草待詔以方藥侍醫. 朕每于行事, 必法前王, 思得巫咸之術, 以實太醫之署.”(『宋大詔令集』)¹⁴¹⁾라 하였다. 淳化 3년(992)에 태종이 太醫局에 명하여 명의를 파견하여 疫災를 입은 백성을 구제한 것도 선왕의 뜻을 본받은 것이었다. 그가 명하길 “古先哲王之愛民也, 大暑流燂, 必施扇喝之仁, 凶年饑饉, 必有滄糜之賜. 如聞今歲, 天災流行, 閭閻之民, 疾疫相繼……………用伸救療之恩, 庶推勤恤之意.”(『宋大詔令集』)¹⁴²⁾라 하였다. 의서를 교정한 것도 “仁宗念聖祖之遺事將墜于地, 乃詔通知其學者, 俾之是正.”¹⁴³⁾하게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선왕이 의학을 중시한 사상을 본받은 것으로 의정의 정책 결정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들이다.

② 濟世仁民

통치자의 의정 사상에서 다른 원천은 濟世仁民이다. 태종이 『太平聖惠方』을 편찬한 목적은 “庶使天高地厚, 明王首之化成, 春秋往來, 布群黎之大惠”하는 데에 있었다. 이를 편찬한 까닭을 “朕尊居億兆之上, 常以百姓爲心, 念五氣或乖, 恐一物之失所, 不盡生理, 朕甚憫焉, 所以親閱方書, 俾令撰集. 冀溥天之下, 各保遐年, 同我生民, 躋于壽域”¹⁴⁴⁾이라 하였다.

태종만 이러한 仁民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밖의 황제들도 정도는 다르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徽宗이 『本草』를 다시 편수한 것도 “仁民愛物之意寓焉.”¹⁴⁵⁾한 것이다. 그가 『聖濟經』을 편찬한 동기도 “可以養生, 可以立命, 可以躋一世之民于仁壽之域…………”¹⁴⁶⁾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것들 모두 송대 통치자들이 백성들의 의약을 중시한 것이 위선은 아니라 濟世仁民하는 사상에 연유한 것은 확실하다.

③ 文治를 표방하고 仁政을 선양함

송대 통치자들은 濟世仁民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文治를 표방하며, 仁政을 선양하여 人心을 얻으려는 사상도 있었다. 의학 서적을 교정하여 완성될 때마다 반드시 서문을 달아 황제의 공덕에 대해 크게 찬양하였는데, 이를테면 “盛德承統, 深仁流化, 頒此方論, 惠民區宇, 贊天地之生育, 正萬物之性命, 使歲無疵癘, 人不夭橫, 熙熙然歌樂于聖造者也.”¹⁴⁷⁾라한 것 등이다. 또한 자선 기구를 설치할 때마다 “以示朝廷惠養元元之意”, “以示朝廷衿恤之意”라 선양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송대 통치자들이 方藥을 배포하고 백성을 撫恤하는 등 유익한 일을 하였지만, 文治를 뵈내고 仁政을 표방하는 사상도 분명 있었다.

141)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107.
142)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p. 107.
143) 高保衡·林億 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4.

144) 趙昉 撰. 太平聖惠方 御制太平聖惠方·序. 서울. 翰成社. 1979. p. 3.
145) 唐慎微 撰. 證類本草 重修證類本草序. 文淵閣四庫全書·子部·醫家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740*4.
146) 趙佶 撰. 宋徽宗御制聖濟經 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1.
147) 孫兆 撰. 外臺秘要方 原序. 文淵閣四庫全書·子部·醫家類.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6. p. 736.

III. 結 論

송대 통치자들은 의약을 애호하고 의학의 발전을 중시하였다. 궁정 의료 기구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평민 의료와 의약과 관련된 자선 기구를 늘여 백성들의 의료 조건을 개선시킨 정책방향은 진보적이다.

醫籍을 광범하게 수집, 교정, 편찬, 반포하여 의학 문헌을 보존, 정리하고 또한 의학지식을 전파하고 보급하는데 공헌을 하였다. 『내경』, 『상한』 등 기초 이론의 연구도 활발하여 금원시기 학술논쟁에 기초가 되었다. 이는 송대 의정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었다.

정부가 약물을 널리 조사하여 본초를 수정하고, 제약공장, 약국을 설치하여 약물을 전매하고,劑型을 개혁하여 “成藥”을 발전시켜 용약의 규범을 통일시킨 등의 조치는 약물에 대한 발전과 의약의 민중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의학 교육에서 태의국과 국가감에 설치한 “醫學”의 교육 제도는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기구의 예측, 전문 과목의 분과, 고시제도, 학교 관리 등의 방면 모두 새로운 경험을 쌓았다. 醫學에서 “三舍法”, “貢額” 등은 의학 교육을 장려하는 조치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송대 의학교육에도 과실은 있었다. 이를테면 제도의 준폐로 교육의 연속성을 잃어 의약 교육 경험의 축적과 계승을 저해함으로써, 잠재력이 결핍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학교육을 전문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의정기구의 설치에 대부분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점은 예측 관계가 혼란스러웠다는 것이다. 상부 소속기관의 견제를 많이 받아 통일된 지도와 협조가 부족했다. 최고 의정기구인 한림의관원도 다른 의약기구를 통제할 권한이 없었고, 직책이 중복되고 인원도 과잉되었다. 醫官院 자체에도 잉여 인원이 많았고 엄격한 관리제도가 부족했다. 따라서 송대에 의관 관리 방면에 있어서 전반적인 효율이 떨어졌다.

IV. 參考文獻

<단행본>

1. 朴炫局 외2人譯. 中國科學技術史. 서울. 一中社. 2003.
2.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 人民衛生出版社. 2000.
3. 趙佶 撰. 宋徽宗御制聖濟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4.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出版社. 1995.
5. 黎靖德 編. 朱子語類 中庸. 中華書局. 1994.
6. 潘衍桐. 書林清話. 叢書集成續編·第66冊·史部. 上海. 上海書店. 1990.
7. 孫兆 撰. 外臺秘要方. 文淵閣四庫全書·子部·醫家類.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6.
8. 宋·高承 撰. 事物紀原. 北京. 中華書局. 1985.
9. 程大昌 撰. 考古編. 北京. 中華書局. 1985.
10. 王冰 次注 林億 等校正. 黃帝內經素問. 文淵閣四庫全書·子部·醫家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1. 孫思邈 撰. 備急千金要方. 文淵閣四庫全書·子部·醫家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2. 蘇舜卿. 蘇學士集.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3. 唐慎微 撰. 證類本草. 文淵閣四庫全書·子部·醫家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4. 王安石 撰. 臨川文集.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5. 朱橚 撰. 普濟方. 文淵閣四庫全書·子部·醫家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6. 章如愚 撰. 群書考索.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7. 張倬 撰. 傷寒兼證析義.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8. 唐慎微 撰. 證類本草. 文淵閣四庫全書·子部·醫家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9. 王執中 撰. 鍼灸資生經. 文淵閣四庫全書·集

- 部·別集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20. 永瑛 撰. 四庫全書總目. 欽定文淵閣四庫全書總目.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21. 丹波元胤 編.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22. 高保衡·林億 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23. 鄭玄 注. 禮記註疏. 文淵閣四庫全書·經部·禮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24. 李林甫 等撰. 唐律疏義.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25. 歐陽修·宋祁 等奉勅撰. 新唐書.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26. 茅坤(明) 批注. 唐宋八大家文抄. 文淵閣四庫全書·集部·總集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27. 托克托 等奉勅撰. 宋史.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28. 馬端臨 著. 文獻通考.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29. 曹仁虎 等奉勅撰. 欽定續文獻通考.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30. 李燾 撰. 續資治通鑑長篇.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31. 王峻 撰. 東雅堂昌黎集註. 文淵閣四庫全書·集部·別集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32. 司馬光 撰. 涑水記聞. 文淵閣四庫全書·子部·小說家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33. 元好問. 遺山集. 文淵閣四庫全書·集部·別集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34. 王應麟 撰. 玉海.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35. 李心傳 撰. 建炎以來繫年要錄.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36. 蔡襄 撰. 端明集. 文淵閣四庫全書·集部·別集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37. 趙昉 撰. 太平聖惠方. 서울. 翰成社. 1979.
38. 謝觀. 中國醫學源流論. 臺北. 古亭書屋. 民國59.